

NABO 추계&세제 이슈

NABO Cost Estimates & Tax Issues

CONTENTS

추계&세제 분석 |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재정소요 분석

OECD 주요국의 가족정책 지출 및 지표 비교 분석

추계&세제 최근이슈 | 2021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가상자산 최근 동향 및 과세 이슈

글로벌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논의 동향







추계&세제 이슈

2021년 Vol.3 통권 제16호

Contents

추계&세제 트렌드	3
2021년 2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4
2021년도 상반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13
추계&세제 분석	19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20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재정소요 분석	30
OECD 주요국의 가족정책 지출 및 지표 비교 분석	44
- 합계출산율 상승기 전후를 중심으로	
추계&세제 최근이슈	63
2021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64
가상자산 최근 동향 및 과세 이슈	72
글로벌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논의 동향	80
주요국의 중기 재정전망 소개: 영국 OBR	89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스웨덴편-	98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111

"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계&세제 트렌드

2021년 2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1년도 상반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2021년 2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문 지 은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45)

2021년 2분기 가결 법률 219건 중 재정수반법률은 81건*(전체의 37.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9건, 지출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74건
- 비용이 추계된 수입법률 1건 및 지출법률 17건 등 18건의 추계 결과 제시

비용이 추계된 수입법률 1건 시행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250억원 수입 감소 예상

- 지방자치단체: 연평균 250억원 수입 감소 예상 일몰기간 감안 시 향후 2년간 연평균 624억원 감소 예상

비용이 추계된 지출법률 17건 시행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780억원 지출 증가 예상

- 국가: 연평균 539억원, 지방자치단체: 연평균 241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수입과 지출 동시유발법률 2건 포함
 - **추계금액은 2022~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금액으로 제시

1. 2021년 2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수반법률 현황

2021년 2분기 국회는 219건의 법률을 가결하였으며, 이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전체의 37.0%인 81건

 이 중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18건의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1건, 지출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17건1)

¹⁾ 추계액이 미미하거나, 시행령 개정, 구체적인 계획 등이 나타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한 63건은 제외하였으며, 미추계건 중 법안 가결 후 정부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건은 「2021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2022년 발간)에서 추계규모 제시 예정

2021년 2분기 가결 재정수반법률 현황 표1

(단위: 건)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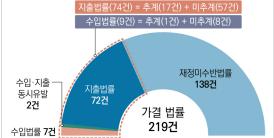
가결 법률	재정수반법률 (추계) ¹⁾					
	소계	수입법률	지출법률			
219	81 ²⁾ (18)	9 (1)	74 (17)			

- 주: 1) () 안은 추계가 곤란하거나 추계액이 미미한 63건을 제외하고 재정소요점검을 시행한 법률 수
 - 2) 수입·지출 동시유발 법률 2건 포함

자료: NABOSTATS-간략조회-재정통계-가결법률의 재정소요점검-가결 재정수반법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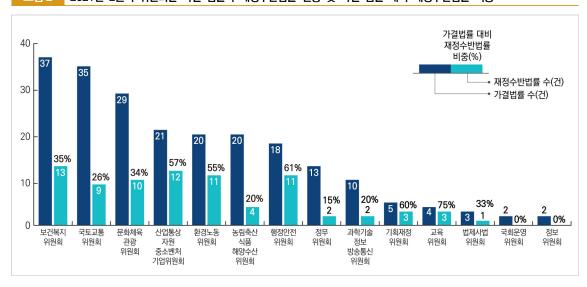


2021년 2분기 재정소요점검 대상 법률 현황



- (위원회별) 2021년 2분기 재정수반법률안이 가장 많이 가결된 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13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12건), 환경노동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11건) 순
 - 재정수반법률안 비중이 높은 위원회는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순

그림 2 2021년 2분기 위원회별 가결 법률과 재정수반법률 현황 및 가결 법률 대비 재정수반법률 비중



2. 2021년 2분기 가결 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가. 수입 부문

2021년 2분기에 가결된 수입법률 시행에 따라 2022년부터 5년간 연평균 250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표 2 2021년 2분기 가결 수입 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구분 재정주체별				수입합계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평균 ¹⁾)
수입	조시	네수입	_	△250	△250 (100.0%)		
유형별	그네이스이	기금수입	-	-	_		
	국세외수입 세외수입		-	_			
	합계		-	△250 (100.0%)	△250 (100.0%)		

주: 1) 향후 5년간(2022~2026년) 연평균 금액

- 1.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 () 안은 전체 중 각각의 비중을 의미

- (수입유형) 수입변동은 지방세수입이 연평균 2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 조세수입(지방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연평균 250억원의 지방세수 감소 예상(일몰기간을 감안 할 경우, 향후 2년간 연평균 624억원 감소)
 - ▶ 기금수입 및 세외수입 관련 법률 없음
- (재정주체별)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연평균 250억원 감소 예상
- (위원회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건이 지방자치단체 수입에 영향

표3 2021년 2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위원회별·수입분야

		수입재정수반법률								
위원회	소계 (A+B, 건)	추계건수 (A, 건)	수입변동 (연평균 ¹⁾ 억원)	미추계 (B,건)						
행정안전위원회	2	1	△250	1						
기획재정위원회	1	-	-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	_	_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_	_	1						
국토교통위원회	3	_	_	3						
합 계	9	1	△250	8						

- 주: 1) 향후 5년간(2022~2026년) 연평균 금액, 일몰기간 감안 시 향후 2년간 624억원 감소 예상
 -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 미추계건수는 모든 재정수반조문을 추계하지 못한 건을 의미

자료: NABOSTATS-간략조회-재정통계-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가결 재정수반법률 결과(위원회별)

나. 지출 부문

2021년 2분기에 가결된 지출법률 중 추계가 가능한 17건 법률 시행 시 2022년부터 5년간 연평균 780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표 4 2021년 2분기 가결 지출 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구분	두체별	지출합계			
	TE	국가				(연평균 ¹⁾)
지출	의무지출	93	-	93 (12.0%)		
지출 유형별	재량지출	445	241	687 (88.0%)		
	합계	539 (69.1%)	241 (30.9%)	780 (100.0%)		

- 주: 1) 향후 5년간(2022~2026년) 연평균 금액
 - 1.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 () 안은 전체 중 각각의 비중을 의미

- (지출유형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일정액을 지출하여야 하는 의무지출은 연평균 93억원(12.0%), 재량지출은 연평균 687억원(88.0%) 지출 증가 예상
 - ▶ 의무지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기가의 요양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 직장복귀 교육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연평균 93억원 지출 증가 예상
 - ▶ 재량지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추가하고,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이자면제를 규정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 등 16건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687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재정주체별) 국가 부담은 연평균 539억원(69.1%),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연평균 241억원(30.9%) 지출 증가 예상
 - ▼국가의 재정부담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부설 연구소를 설치・운영 하도록 한「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개정 등 15건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539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중 공공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 등 6건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지방비 241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위원회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률에 따른 재정소요가 연평균 271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위원회 (연평균 105억원), 행정안전위원회(연평균 96억원) 순으로 지출에 영향
 -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부설 연구소 설치 및 운영 등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외 5건. 연평균 271억원)
 - ▶ 교육위원회 소관: 대학원생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자격 부여 및 저소득층 이자면제 등(「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연평균 105억원)
 -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연평균 96억원)

표5 2021년 2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위원회별·지출분야

		지출 재정수반법률							
위원회	소계		미추계						
<u>-</u> .	조계 (A+B, 건)	추계 (A, 건)	추가재정소요 (연평균, ¹⁾ 억원)	미구계 (B, 건)					
법제사법위원회	1	_	-	1					
정무위원회	2	1	0.2	1					
기획재정위원회	2	2	11	_					
교육위원회	3	1	105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	1	26	1					
행정안전위원회	9	1	96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9	-	-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	1	94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2	2	75	10					
보건복지위원회	13	5	271	8					
환경노동위원회	11	2	95	9					
국토교통위원회	6	1	7	5					
합 계	74	17	780	57					

주: 1) 향후 5년간(2022~2026년) 연평균 금액

자료: NABOSTATS-간략조회-재정통계-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가결 재정수반법률 결과(위원회별)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미추계건수는 모든 재정수반조문을 추계하지 못한 건을 의미



3. 2021년 2분기 가결 재정수반법률 주요 사례

[주요 사례: 수입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대안, 2021.06.29. 의결)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함에 따라 연평균 250억원의 지방세수 감소 예상(2021.7.8. 시행)
 - ▶ 추계대상은 2019년 기준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6~9억원 구간의 지역별 총 공시가격에 세율 특례를 적용한 재산세 수입 감소액으로, 2022년 이후 공시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20.11.)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전망에 따라 상승한다고 가정

丑6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수입 변동: 2022~2026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5년간)	연평균 (2년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기준금액 상향(6억원→9억원)	△610	△638	-	-	-	△1,248	△250	△624

주: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 개정안은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부칙 제2조)하며, 추계기간 5년간의 연평균 금액
- 3. 일몰규정을 감안하면 연평균 624억원 감소 예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사례: 지출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대안, 2021.05.21. 의결)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지급 대상에 대학원생을 추가하고, 저소득가구 및 다자녀가구 대학생에 대해 재학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함에 따라 연평균 105억원 지출 증가 예상(2022.01.01. 시행)
 - ▶ 추계대상은 전업 대학원생 중 기존 대학생 학자금대출 비중과 평균 대출금액을 적용하여 대출금액을 산정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의 자녀의 재학기간 이자금액을 추산

丑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대학원생 추가 및 저소득층 등 이자면제	50	80	108	132	153	523	105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안, 2021.06.29. 의결)

-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연평균 96억원 지출 증가 예상(2023.07.21. 시행)
 - ▶ 추계 대상은 전국 공중화장실 중 비상벨이 미설치된 화장실을 대상으로 하며, 관리비용은 신규 비상벨 설치 수에 평균 관리비를 곱하여 산정
 - ➣ 비상벨 설치 평균비용은 기존 사례를 참고하여 평균 100만원으로 가정하며, 관리비용은 공중화장실 개소당 비상벨 관리에 소요되는 통신비용으로 4.5만원으로 가정

표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억워)

							(611. 45
재정수반요인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	428	18	18	18	482	96

주 1. 법 시행일에 따라 추계액은 2023년부터 발생하며, 사업 첫 해에 설치를 완료하고 이후에는 관리비 및 신규 설치비용이 소요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안, 2021.06.29. 의결)

- 혁신도시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에 따라 연평균 74억원 지출 증가 예상(2022.01.28. 시행)
 - ▶ 추계 대상은 10개 혁신도시 중 수소충전소가 설치중인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9개 혁신도시에 수소충전소를 3년의 계획 기간 동안 설치할 때 소요 비용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소요 비용으로 구분
 - ▶ 수소충전소 설치비용은 기존 사업을 참고하여 1기당 30억원으로 가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률(전체 차량의 3.3%)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면수의 5%를 전용주차구역으로 가정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다의 어위)

							(건커: 국전)
재정수반요인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혁신도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188	90	90	_	_	368	74

주 1. 수소충전소는 3년 내 설치하며 전용 주차구역은 사업 첫 해에 설치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인재근의원 대표발의, 2021.06.29. 의결)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부설기관인 연구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연평균 85억원 지출 증가 예상 (2022.01.28. 시행)
 - ▶ 추계대상은 부설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비용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자산취득비, 임차료로 구성되며, 유사사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워의 경비와 개정안에서 규정한 신설업무를 고려하여 설정

표 1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인재원 부설 연구소 설립·운영	84	84	86	87	84	425	85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대안, 2021,04,29, 의결)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기간의 요양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 직장복귀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함에 따라 연평균 93억원 지출 증가 예상(2022.01.01. 시행)
 - ▶ 추계대상은 연간 요양종결자의 60% 수준으로 가정하며, 지급단가는 1인당 재활수가 76만원으로 가정
 - ▶ 지급대상과 단가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직장복귀 필요교육지원 시범사업 결과에 기반

표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직장복귀 지원	89	91	93	96	98	467	93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부록] 2021년도 2분기 재정수반법률 주요 재정수반요인 및 추계 현황

(단위: 언워)

			(단위: 역· 2022~2026년		
수입	의안	의안명			
지출	번호	(주요 재정수반요인)	연평균	합계	
수	21111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0	△1.248	
입	2111122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대상 주택공시지가 6억원이하→9억원 이하 조정)	∆250	△1,240	
	211025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5	523	
	2110250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 대상자에 추가 및 저소득층 이자면제)	100	525	
	211112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6	482	
	2111124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90	402	
	0111145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94	470	
	2111145	(수산부산물 발생량, 처리실적에 대한 통계조사 실시)	94	470	
	21098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3	467	
	2109810	(직장복귀 산재근로자에 대한 복귀교육 지원)	93	407	
	210200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0.5	405	
	2103608	(인재원 부설 연구기관 설치·운영)	85	425	
지	01111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7	200	
출	2111152	(범죄사건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지원 등)	77	386	
	211114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4	368	
	2111147	(혁신도시 내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등)	74	300	
	011115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0	200	
	2111154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점자 등 코드 표시 지원 등)	73	365	
	0100040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34	100	
	2103246	(위해성 평가 수행 및 관리기반 마련 등)	34	169	
	0110010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대안)	00	130	
	2110248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 등)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ГЛ	
	2110269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예산서, 기금운용계획서 등의 작성)	11	54	

주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2. 2022~2026년 동안 연평균 10억원 이상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법률만 제시

2021년도 상반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김 문 경 · 태 정 림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4, 4652)

총수입¹)

2021년 상반기 총수입은 298.6조원으로 주요 국세수입 및 기금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6조원(32.1%) 증가

- (국세수입) 2021년 상반기 국세수입은 181.7조원으로 전년 동기(132.9조원) 대비 48.8조원(36.7%) 증가
 - ▶ 작년 하반기 경기 회복세와 함께 주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고, 자산시장 호조 지속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 자산관련 세수 증가 및 상속세 우발세수 발생 등에 기인
 - ➤ 2021년 상반기 국세수입 진도율은 57.8%로 전년 동기 대비 11.2%p 높은 수준
- (국세외수입) 2021년 상반기 국세외수입은 116.8조원으로 전년 동기(93.0조원) 대비 23.8조원(25.5%) 증가
 - ▶ 사회보장성기금의 자산운용수익 증가(14.1조원) 및 사회보장기여금 증가(2.3조원). 일반회계로 1분기 旣세입 조치된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세입납부액(1.4조원) 등에 주로 기인
 - ≥ 2021년 상반기 국세외수입 진도율은 58.3%로 전년 동기 대비 10.1%p 높은 수준

2021년 상반기 총수입 실적

(단위: 조원, %)

		총수입 실	실적 누계		진되	E율	'20 결산	'21 예산 (D)
구분	'20.상반기 (A)	'21.상반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20.상반기 (A/C)	'21.상반기 (B/D)	(C)	
총수입	226.0	298.6	72.6	32.1	47.2	58.0	478.8	514.6
1. 국세수입	132.9	181.7	48.8	36.7	46.6	57.8	285.5	314.3
2. 국세외수입	93.0	116.8	23.8	25.5	48.2	58.3	193.1	200.3
- 세외수입	13.1	16.4	3.2	24.4	48.8	56.0	26.9	29.3
- 기금수입	79.9	100.4	20.5	25.7	48.0	58.7	166.2	171.0
3. 세입세출외	0.0	0.0	0.0	0.0	14.9	0.0	0.1	-

주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¹⁾ 중앙정부의 총수입은 예산수입(국세수입 및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으로 구성된다. 다만, 여기서는 수입의 성격(국세인지 아닌지)을 기준으로 하여 총수입을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국세외수입은 예산수입 중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합한 것으로 표기한다.

2. 국세수입

가. 개관

2021년 상반기 국세수입은 181.7조원으로 전년 동기(132.9조원) 대비 48.8조원(36.7%) 증가하였으며, 진도율은 57.8%로 전년 동기(46.6%) 대비 11.2%p 높은 수준

- 국세수입 실적 호조는 2020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로 인한 주요 세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가 및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 자산관련 세수 증가. 상속세 등 우발세수 발생에 주로 기인
- 2020년 상반기 납부유예 및 2021년으로 이월된 세수를 감안할 경우 2021년 상반기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35.5조원(26.7%) 증가한 것에 해당
 - ▶ 2020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납부유예된 세수 및 2020년 세수 중 2021년으로 이월되어 올해 실적으로 집계된 세수(이월납부) 규모는 약 13.3조원

丑2 2021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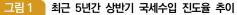
(단위: 조워 %)

	(인귀. 소면, %)										
		상반기	누계		진	율	'20 결산	'21 예산			
구분	'20.06 (A)	'21.06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20.상반기 (A/C)	'21.상반기 (B/D)	(C)	21 에건 (D)			
국세수입	132.9	181.7	48.8	36.7	46.6	57.8	285.5	314.3			
ㅇ 소득세	40.9	60.3	19.4	47.5	43.9	60.6	93.1	99.5			
- 종합소득세	2.0	9.8	7.8	385.9	12.5	59.4	16.1	16.5			
- 양도소득세	11.1	18.3	7.3	65.6	46.8	72.0	23.7	25.5			
- 근로소득세	20.8	24.0	3.1	15.0	50.9	55.0	40.9	43.5			
ㅇ 법인세	29.3	39.7	10.4	35.6	52.7	60.5	55.5	65.5			
o 상속·증여세	4.1	8.4	4.2	101.8	39.9	70.0	10.4	11.9			
ㅇ 부가가치세	31.0	36.1	5.1	16.6	47.8	52.1	64.9	69.3			
ㅇ 증권거래세	3.3	5.5	2.2	68.0	37.5	66.5	8.8	8.3			
o 교통·에너지·환경세	6.3	9.0	2.7	43.2	44.9	57.1	13.9	15.7			
ㅇ 관세	3.5	3.9	0.3	9.9	49.8	46.3	7.1	8.3			
ㅇ 기타	14.6	19.0	4.3	29.5	45.9	53.2	31.9	35.7			

주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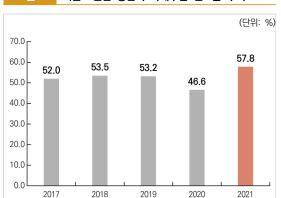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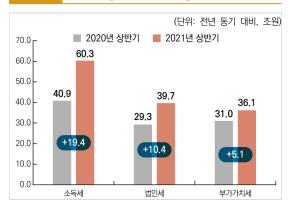


그림 2 2021년 상반기 국세수입 증가액



주: 2017~2020년은 실적 대비 진도율, 2021년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세목별 증감원인

소득세(60,3조원)는 부동산거래 확대 및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2020년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유예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조원(47.5%) 증가

- 양도소득세는 18.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조원(65.6%) 증가
 - ▶ 부동산매매량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 ('20.11~'21.4) 주택 3.3, 토지 10.0
 - 종합주택 매매가격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 ('20.4분기) 5.4, ('21.1분기) 6.8. ('21.2분기) 8.2
- 종합소득세는 9.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조원(385.9%) 증가
 - 2020년 실시된 코로나19 세정지원(종합소득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기저효과 및 이월세수 영향

법인세(39.7조원)는 2020년 법인실적 개선 및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조원(35.6%) 증가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조원, 개별기준): ('19) 56.3, ('20) 67.5, 19.8% 증가

부가가치세(36.1조원)는 내수 회복 및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조원(16.6%) 증가

- 민간소비증가율(전기대비, %): ('20.4분기) △1.3%, ('21.1분기) 1.2, ('21.2분기) 3.5
- 통관수입증가율(전년 동월 대비, %): ('20.상반기) △9.0, ('21.2분기) 24.0

증권거래세(5.5조원)는 주식시장 호조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조원(68.0%) 증가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8.4조원)는 상속세 우발세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조원(101.8%) 증가

증권거래대금(조원): ('19.12~'20.5) 1,911, ('20.12~'21.5) 3,811. 전년대비 99.0% 증가

3. 국세외수입

2021년 상반기 국세외수입은 116.8조원으로 전년 동기(93.0조원) 대비 23.8조원 증가하였으며, 진도율은 58.3%로 전년 동기(48.2%) 대비 10.1%p 증가

- 상반기 국세외수입 증가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자산운용수익 증가로 인한 기금 재산 수입의 증가(14.1조원), 사회보장기여금 증가(2.3조원) 등 주로 기금수입의 증가(20.5조원)에서 기인
 - ➣ 기금의 자산운용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국민연금 12.2조원, 사학연금 1.0조원, 산재보험 0.7조원 등 증가
 - ▶ 그 외 일반회계 세외수입에서는 1분기 旣세입 조치 된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증가(1.4조원), 특별회계 우체국 예금운용수익 증가(0.2조원) 등

표3 2021년 상반기 국세외수입 실적

(단위: 조원, %)

		상반기	기 누계		진드	E율	'00 AIT	'01 MILL
구분	'20.06 (A)	'21.06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20.상반기 (A/C)	'21.상반기 (B/D)	'20 실적 (C)	'21 예산 (D)
국세외수입	93.0	116.8	23.8	25.5	48.2	58.3	193.1	200.3
ㅇ 일반회계 세외수입	6.9	9.5	2.6	37.7	59.2	69.6	11.7	13.7
- 재산수입	4.4	6.1	1.8	40.9	97.0	100.3	4.5	6.1
- 경상이전수입	2.2	2.9	0.7	31.8	35.2	46.1	6.3	6.3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0.3	0.3	0.0	0.0	39.0	39.7	0.7	0.8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¹⁾	-	-	-	-	-	-	-	-
- 기타 ²⁾	0.1	0.1	0.0	0.0	42.6	36.9	0.2	0.4
ㅇ 특별회계 세외수입	6.2	6.8	0.6	9.7	40.8	43.9	15.2	15.6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2.9	3.2	0.2	6.9	46.2	49.5	6.4	6.4
- 재산수입	0.1	0.1	0.0	0.0	14.8	34.7	0.6	0.4
- 경상이전수입	1.5	2.0	0.5	33.3	32.7	40.7	4.7	5.0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0.6	0.8	0.1	16.7	42.3	44.7	1.5	1.7
- 기타 ²⁾	1.0	0.8	△0.2	△20.0	50.4	35.9	1.9	2.1
o 기금수입	79.9	100.4	20.5	25.7	48.0	58.7	166.2	171.0
- 사회보장기여금	37.4	39.7	2.3	6.1	50.2	51.5	74.6	77.0
- 재산수입	13.6	27.8	14.1	103.7	48.0	103.7	28.4	26.8
- 경상이전수입	12.8	14.9	2.1	16.4	48.2	48.2	26.6	31.0

		상반기	기 누계		진드	율	'20 실적	'21 예산 (D)
구분	'20.06 (A)	'21.06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20.상반기 (A/C)	'21.상반기 (B/D)	(C)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2	2.6	0.5	22.7	28.4	33.5	7.6	7.9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3.1	14.2	1.2	9.2	47.9	54.2	27.3	26.2
- 기타 ³⁾	0.8	1.2	0.4	50.0	43.2	55.9	1.8	2.1

주: 1) 유가증권매각대 등

2) 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3) 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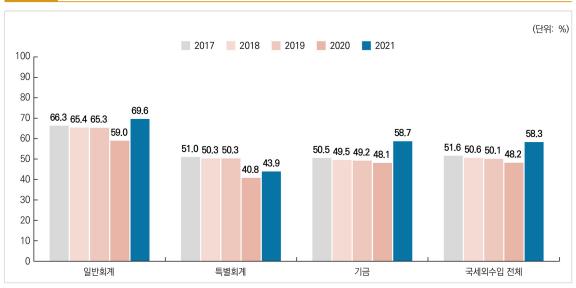
주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임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9.5조원으로 전년 동기(6.9조원) 대비 2.6조원(37.7%) 증가했으며, 진도율은 69.6%로 전년 동기(59.2%) 대비 10.4%p 상승
 - ➤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분(2.6조원)은 중 1.4조원은 1분기 旣세입 조치 된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증가분
 - ▶ 2021년 상반기에서는 공정위 담합기업 과징금, 경찰청·법무부 벌금·과료 수납 증가로 경상이전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0.7조원 증가하였으며, 그 외 정부출자수입 증가로 재산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0.3조원 증가
-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6.8조원으로 전년 동기(6.2조원) 대비 0.6조원(9.7%) 증가했으며, 진도율은 43.9%로 전년 동기(40.8%) 대비 3.1%p 상승
 - ➤ 우체금예금운용수익이 증가하면서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0.2조원 증가
 - ➣ 2020년 유예된 정유업계 석유수입·판매 부과금 및 항공업계 과징금이 올해 수납되면서 특별회계 경상이전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0.5조원 증가
- 기금수입은 재산수입,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 동기(79.9조원) 대비 20.5조원(25.7%) 증가한 100.4조원이며, 진도율은 58.7%로 전년 동기(48.0%) 대비 10.7%p 상승
 - 재산수입(전년 동기 대비 14.1조원 증가)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수익 증가에 기인
 - 사회보장기여금은 전년 동기(37.4조원) 대비 2.3조원 증가한 39.7조원이며, 이 외에 경상이전수입(전년 동기 대비 2.1조원 증가),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전년 동기 대비 1.2조원 증가) 등의 항목도 전년 동기 대비 수납액이 증가

그림 3 최근 5년간 회계별 상반기 국세외수입 진도율 추이



주: 2017~2020년은 실적 대비 진도율, 2021년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추계&세제 분석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재정소요 분석 OECD 주요국의 가족정책 지출 및 지표 비교 분석 – 합계출산율 상승기 전후를 중심으로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태 정 림 · 김 문 경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2, 4654)

1.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현황

2020회계연도 총수입은 478.8조원으로 2019년 473.1조원 대비 5.7조원(1.2%) 증가하였으며, 예산(제4회 추경예산) 470.7조원을 8.1조원(1.7%) 상회

- 국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적 요인과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확대 등 제도적 요인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9조원(△2.7%) 감소하였으나,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자산관련 세수 증가로 국세수입 감소폭은 일부 완충
- 국세외수입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 증가 및 기금 운용수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8조원 (7.7%) 증가하였고, 이 중 기금수입이 전년 대비 12.2조원(7.9%) 증가하며 총수입 증가를 견인

丑1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현황

(단위: 조원, %)

	2019	2020								
구분	구분 결산 예산 (A) (B)	예산	예산 결산	전년 대	전년 대비(C-A)		예산 대비(C-B)			
		(C)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 수 입(1+2)	473.1	470.7	478.8	5.7	1.2	8.1	1.7			
1. 국세수입	293.5	279.7	285.5	△7.9	△2.7	5.8	2.1			
2. 국세외수입	179.3	191.0	193.1	13.8	7.7	2.1	1.1			
ㅇ 세외수입	25.3	29.1	26.9	1.6	6.3	△2.2	△7.6			
o 기금수입	154.0	161.9	166.2	12.2	7.9	4.3	2.7			
- 사회보장기여금	69.6	73.4	74.6	5.0	7.2	1.2	1.6			

주: 1. 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총수입 결산은 국고통합계정 여유자금 운용수익인 세입세출외가 합산된 금액임. 따라서 항목별 예산대비 증감 합계와 총수입의 예산대비 금액은 일치하지 않음

2. 2020회계연도 국세수입 분석

가. 국세수입 총괄 분석

2020회계연도 국세수입은 285.5조원으로, 2019년 결산 293.5조원 대비 7.9조원(△2.7%) 감소하였고, 예산 279.7조원 대비로는 5.8조원(2.1%) 초과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내수침체 및 기업실적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국세인 부가가치세 징수액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확대와 같은 제도적 요인이 국세 수입 감소에 영향
- 한편 유동성 증가 및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부동산·증권시장 호조로 자산 관련 세수(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증가하며 세수 감소를 완화

표 2 2020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현황

(단위: 조원, %)

	2019			2020							
구분	결산	예산	결산	전년 대비	d(C-A)	예산 대	н(С–В)				
	(A)	(B)	(C)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293.5	279.7	285.5	△7.9	△2.7	5.8	2.1				
일반회계	286.0	271.9	276.3	∆9.8	∆3.4	4.4	1.6				
내국세	255.8	240.3	247.0	△8.8	∆3.4	6.6	2.8				
1. 소득세	83.6	88.5	93.1	9.5	11.4	4.6	5.2				
2. 법인세	72.2	58.5	55.5	△16.7	∆23.1	∆3.0	△5.1				
3. 상속·증여세	8.3	8.4	10.4	2.0	24.6	2.0	23.3				
4. 부가가치세	70.8	64.6	64.9	△5.9	△8.4	0.3	0.5				
5. 개별소비세	9.7	9.5	9.2	△0.5	△5.2	△0.3	△2.8				
6. 증권거래세	4.5	4.9	8.8	4.3	95.8	3.8	77.5				
7. 인지세	0.8	1.1	1.0	0.1	14.1	△0.1	△8.3				
8. 과년도수입	5.9	4.9	4.2	△1.7	△29.1	△0.8	△15.5				
교통·에너지·환경세	14.6	15.5	13.9	△0.6	△4.3	△1.5	△9.9				
관세	7.9	7.7	7.1	∆0.8	△10.4	△0.6	∆8.5				
교육세	5.1	5.0	4.7	△0.4	∆8.2	△0.3	△6.9				
종합부동산세	2.7	3.3	3.6	0.9	34.8	0.3	8.4				
특별회계	7.4	7.8	9.3	1.8	24.9	1.4	18.3				
주 세	3.5	3.2	3.0	△0.5	△14.1	△0.2	△4.9				
농어촌특별세	3.9	4.7	6.3	2.3	59.8	1.6	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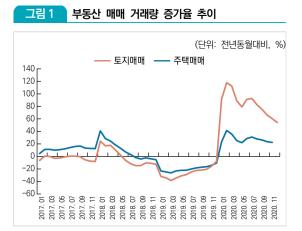
주: 1. 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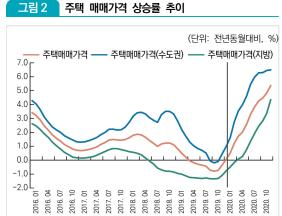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세목별 분석

소득세는 93.1조원으로 전년 대비 9.5조원(11.4%) 증가하였고 예산을 4.6조원(5.2%) 상회, 이는 양도소득세가 전년 대비 7.6조원(46.9%) 증가한 점에 주로 기인

-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 확대로 양도소득세가 전년(16.1조원) 대비 7.6조원(46.9%), 예산 (17.4조원) 대비 6.2조원(35.9%) 증가
- 반면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실시된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유예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전년 대비 0.7조원(△4.2%) 감소한 16.1조원이 수납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및 부동산거래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법인세는 55.5조원으로 전년 대비 16.7조원(△23.1%) 감소하였고. 예산을 3.0조원(△5.1%) 하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법인 영업실적 감소 등 경기적 요인에 기인

 2019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반도체·석유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한 수출감소 등의 영향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당기순이익은 크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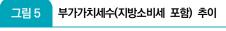
그림 4 반도체·석유화학제품 수출액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및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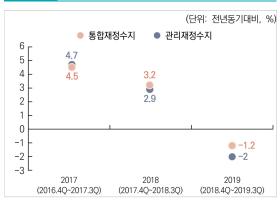
부가가치세는 64.9조원으로, 전년 대비 5.9조원(△8.4%) 감소하였고, 예산을 0.3조원(0.5%) 상회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 및 통관수입 감소 등 경기적 요인과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확대1) 등 제도적 요인의 영향이 반영





명목 민간소비 증감률 비교 그림 6 (순해외소비 차감 전vs.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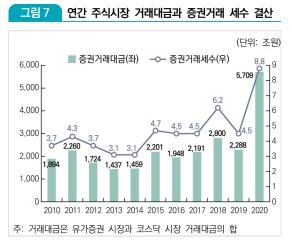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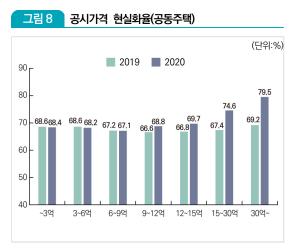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¹⁾ 부가가치세 징수액 중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는 비율은 2019년 11%에서 15%로 상향된 후 2020년부터 15%에서 21%로 확대되었다. 2020년 지방소비 세 이양비율이 6%p 인상되면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수는 4.9조원 감소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관련 세목은 유동성 증가 및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지산시장 호조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세수입에 대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

- 상속세 및 증여세는 10.4조원으로 자사가치 상승과 증여건수의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0조원(24.6%) 증가했고 예산을 2.0조원(23.3%) 상회
- 증권거래세는 8.8조원으로, 개인투자자의 매수 확대 등에 따른 주식시장 호황과 함께 전년 대비 4.3조원 (95.8%) 증가했고 예산을 3.8조원(77.5%) 상회
- 종합부동산세는 3.6조원으로, 시세상승 및 토지 및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정책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9조원(34.8%) 증가했고, 예산을 0.3조원(8.4%) 상회





자료: 국세청, 한국거래소 및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2020회계연도 국세외수입 분석

가. 국세외수입 총괄 분석

2020년 국세외수입은 193.1조원으로 전년 대비 13.8조원(7.7%) 증가하였으며, 기금수입의 증가세 확대로 예산 대비 2.1조원(1.1%) 초과 수납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1.7조원으로 예산 12.9조원 대비 1.2조원(△9.3%) 과소수납되었으나. 재산수입 및 경상이전수입의 증가로 전년 대비로는 2.2조원(23.2%) 증가

-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15.2조원으로 예산 16.2조원 대비 1.0조원(△6.2%) 과소수납되었으며,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의 감수로 전년 대비로도 0.5조원(△3.2%) 감소
- 기금 수입은 166.2조원으로 가입자 수 및 기금 운용수익 증가 등에 따라 예산 161.9조원 대비 4.3조원(2.7%) 초과수납되며 2020년 국세외수입 전체 초과수납을 견인하였으며, 전년 대비로는 12.2조원(7.9%) 증가

丑3 2020회계연도 국세외수입 회계별·성질별 결산 현황

(단위: 조원, %)

	2019			20	20		
구 분	결산	예산	결산	전년 대비	I(C−A)	예산 대비	II(C – B)
	(A)	(B)	(C)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국세외수입(a+b+c)	179.3	191.0	193.1	13.8	7.7	2.1	1.1
사회보장기여금	69.6	73.4	74.6	5	7.2	1.2	1.6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6.7	6.8	6.4	△0.3	△4.5	△0.4	△6.7
재산수입	29.0	31.8	33.6	4.6	15.9	1.8	5.7
경상이전수입	36.1	39.1	37.6	1.5	4.2	∆1.5	∆3.9
재화및용역판매 수입	9.8	10.6	9.8	0.0	0.0	△0.8	△7.6
수입대체경비수입	0.4	0.4	0.1	△0.3	△75.0	△0.3	△75.0
관유물매각대	2.7	2.9	2.9	0.2	7.4	△0.0	△0.5
융자및전대차관원금 회수	24.9	25.7	28.2	3.3	13.3	2.5	9.9
차입금및여유자금 회수	0.05	-	-	-	-	-	-
a. 일반회계	9.5	12.9	11.7	2.2	23.2	△1.2	△9.3
재산수입	3.3	4.7	4.5	1.2	36.4	△0.2	△4.3
경상이전수입	4.9	6.9	6.3	1.4	28.6	△0.6	△8.7
재화및용역판매 수입	0.8	0.9	0.7	△0.1	△12.5	△0.2	△22.2
수입대체경비수입	0.4	0.4	0.1	△0.3	△75.0	△0.3	△75.0
관유물매각대	0.1	0.1	0.1	0.0	0.0	0.0	0.0
융자및전대차관원금 회수	0.0	0.0	0.0	△0.0	△0.0	△0.0	△0.0
차입금및여유자금 회수	0.05	-	-	-	-	-	-
b. 특별회계	15.7	16.2	15.2	△0.5	△3.2	△1.0	△6.2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6.7	6.8	6.4	△0.3	△4.5	△0.4	△5.9
재산수입	0.6	0.7	0.6	0.0	0.0	△0.1	△14.3
경상이전수입	4.7	4.9	4.7	△0.0	△0.0	△0.2	△4.1
재화및용역판매 수입	1.5	1.7	1.5	△0.0	△0.0	△0.2	∆11.8
관유물매각대	1.1	0.9	1.0	△0.1	∆9.1	0.1	11.1
융자및전대차관원금 회수	0.9	1.2	0.9	△0.0	△0.0	△0.3	△25.0
c. 기 금	154.0	161.9	166.2	12.2	7.9	4.3	2.7
사회보장기여금	69.6	73.4	74.6	5.0	7.2	1.2	1.6
재산수입	25.1	26.4	28.4	3.3	13.1	2.0	7.6
경상이전수입	26.5	27.4	26.6	0.1	0.4	△0.8	△2.9

	2019			20	20		
구 분	결산	예산	결산	전년 대비(C-A)		예산 대비(C-B)	
	(A) (B)	(C)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재화및용역판매 수입	7.5	8.1	7.6	0.1	1.3	△0.5	△6.2
관유물매각대	1.5	1.9	1.8	0.3	20.0	△0.1	△5.3
융자및전대차관원금 회수	24.0	24.5	27.3	3.3	13.8	2.8	11.4

- 주: 1. 총수입 기준으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와 국채발행 수입, 차입금 등의 보전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함
 - 2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이 해당됨
 - 3 '재산수입'은 관유물대여료, 정부출자수입, 전대차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등, '경상이전수입'은 연금수입, 벌금 및 몰수금, 변상금 및 위약금, 가산금 등,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병원수입, 항공·항만 및 용수수입, 실습수입, 잡수입 등, '수입대체경비수입'은 「국가재정법」제53 조제1항에 의한 경비로 지출되는 수입, '관유물매각대'는 고정자산, 토지 및 무형자산, 재고자산 및 유동자산 등, '융자 및 전대차관 회수'는 지방자 치단체, 통화 및 비통화금융기관, 기타 민간 등으로부터 받는 융자원금과 전대차관 회수,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는 국공채 발행, 민간차입금, 유가증권 매각대, 정부예금회수 등임
 - 4. 단수조정으로 인한 차이 발생
 - 5. 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임

자료: 열린재정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국세외수입의 예산 대비 과소수납 및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관리 강화 필요

- 일반회계는 2018년부터 예산 대비 과소수납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최근 10년간 연례적 과소수납이 발생하였고, 기금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과소수납되었으나 2020년에는 초과수납으로 전환
 - 최근 3년간 과소수납이 발생한 주요 항목2)은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5.7%), 관유물매각대(△5.2%), 재화 및용역판매수입(△4.8%)
- 국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2011년 7.2%에서 2020년 8.9%까지 상승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11년 10.2조원에서 2020년 19.1조원으로 8.9조원(연평균 증가율 7.2%) 증가
 - 최근 3년간 미수납이 발생한 주요 항목³⁾은 경상이전수입(△25.4%), 관유물매각대(△18.5%), 융자및전대차관 원금회수(△6.3%)

²⁾ 주요 과소수납 내역: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우편 물량 감소에 따른 우정사업 과소수납(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농산물 비축분 방출물량 감소에 따른 농산물가격안 정기금 과소수납(관유물매각대), 체육진흥투표권 결산 감소 등으로 인한 잡수입 과소수납(재화및용역판매수입) 등

³⁾ 주요 미수납 내역: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61.6%) 저조(경상이전수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및 조기회수 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미수납(융자및전대차관 원금회수) 등

그림 9 최근 10년간 국세외수입 회계별 과소수납 추이



그림 10 국세외수입 미수납률 및 미수납액(2011→2020)



- 예사과 수납액(결사액)과의 차이인 과소수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예산편성시 자산의 매각·징수·회수 가능성을 고려하고, 추계가 필요한 항목의 경우 국세외수입 추계모형을 활용하여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미수납 관리 개선을 위해 국세외수입에 대한 종합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 ▶ 국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기본법 제정 및 국세외수입 부과·징수 성과평가 제도 정착을 검토할 필요

나. 주요 이슈 분석

코로나19 정부시책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 감소 및 지출 증가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과 국가예산을 재원으로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일부 경감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치료액 전액 부담 지원책 추진
 - ▶ 건강보험료 경감은 다른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국가 예산으로 경감액을 최대한 지원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 모색 필요
 -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수가 신설,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가 건강보험에 정산해야 할 부분을 미지급한 사례가 있어 예산 편성 등 대안 마련 필요

고용보험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차입(기금예수금)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할 필요

- 2020년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총수입 기준으로 6.5조원 적자를 보였으며, 국고지원 및 예수금(5.8억원)을 포함한 총계기준으로도 0.6조원 적자
- 2020년 예수금(4.7조원)에 대한 예수이자상환액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총 6.511억원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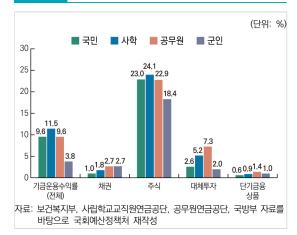
군인연금의 기금운용수익률은 최근 5년(2016년~2020년) 간 4대 공적연금의 기금운용수익률 중 2018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금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2020년에도 금융부문 자산을 구성하는 채권, 주식, 대체투자, 단기금융상품 중 주식과 대체투자에서 낮은 수익률을 보임





그림 12 2020년 4대 공적연금의 자산유형별 수익률 현황



4. 요약 및 시사점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020회계연도 총수입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자산 관련 세목의 세입 및 재산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총수입 감소를 완충

- 2020회계연도 국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적 요인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정지원 등 제도적 요인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
- 반면 시중 유동성 증가 및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부동산 및 증권시장 호조가 발생함에 따라 자산 관련 세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세수입 감소폭은 일부 완화
 - ▶ 과거 국세수입 자료 등을 이용하여 자산가격이 국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자산가격 상승은 국세수입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
- 국세외수입 또한 증권시장 호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 주식매매차익 실현, 공무원연금기금의 채권·주식 등 투자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재산수입이 전년 대비 4.6조원(15.9%) 증가하며 총수입 증가에 기여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이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을 도모할 필요

- 우선적으로는 어려운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미수납된 기존 재정수입에 대한 징수·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함
 - ▶ 국세 체납발생총액 중 정리되지 못한 미정리액 비중은 최근 5년 연속 50%를 상회하는 등 높은 수준이며, 국세외수입 또한 수납률 저조 문제가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상황
 - ▶ 미수납 및 불납결손은 재정건전성 악회뿐 아니라 성실한 납부자와 불성실 납부자 간의 불공정을 야기하므로 부과된 재정수입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우리 세입여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필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재정소요 분석

김 진 이 추계세제분석관 (02-6788-3738)

건강보험은 코로나19의 광범위한 진단과 신속한 치료. 효율적인 의료자원의 동원 등 코로나19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재정 부담도 증가

● 정부는 건강보험과 국가예산으로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경감. 진단검사비와 치료비, 백신접종비 지원 등 코로나19 지원책을 추진 중인데,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부담도 증가

코로나19 지원시책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험료 경감에 따라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진단검사비, 백신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수가 신설로 급여비 지출은 증가

 보험료 경감분(9,115억원) 중 6.459억원과 코로나19 관련 수가 신설 등에 따른 진료비 총 8.037억원1) 중 공단부담금(약 81% 수준으로 추정2)) 등을 건강보험이 추가 부담한 것으로 분석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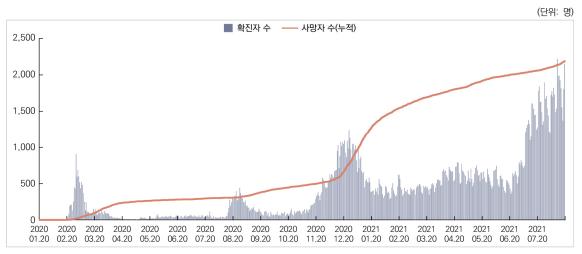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감을 반복해오다. 2021년 6월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우세 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4차 유행 국면에 접어듦

- 2021년 8월 1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152명,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30.808명이며 누적 사망자 수는 2,191명(치명률 0.95%)
 - ▶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2021년 7월 7일 이후 6주 연속 확진자가 1,000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8월 11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 기록

¹⁾ 건강보험 진료일 기준 2020년 1월~2021년 3월 진료분(2021년 6월 심사결정분까지 반영)

²⁾ 코로나19 관련 신설 수가 항목이 포함된 진료명세서 5,351,389건을 분석한 결과 진료비 총액은 4조 76억원, 공단부담금은 3조 2,460억원으로 진료비 총액 중 81% 수준이었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건강보험 진료일 기준 2020.1.1.~2020.12.31. 청구자료 분석 결과)

그림 1 우리나라 일일 신규 확진자 및 누적 사망자 수 추이(2021.8.10.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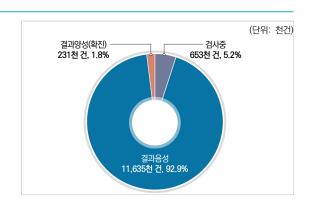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인 진단검사 확대,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 등을 추진해 왔으며.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된 2021년 2월부터는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 진단검사의 경우 선별진료소를 유영하여 진단검사의 접근성을 높이고 대규모의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함 ≥ 2021년 8월 19일 기준 누적 검사수 1,251만 8,704만건, 누적 확진율은 1.9%

코로나19 진단 검사 현황 표1

누적 검사수	12,518,704 건
누적 검사완료수	11,865,964 건
누적 확진율	1.9 %

자료: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 2월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를 시작으로 시행되었으며 이후 연령, 계층별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 중
 - ▶ 8월 19일 0시 기준으로 총 24,306,127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인구 대비 47.3%), 접종완료자는 총 10,812,327명(인구 대비 21.1%)

丑2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2021.8.19. 0시 기준)

(단위: 명, %)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B)	누적 접종(A+B)	인구 ¹⁾ 대비 접종률
1차 접종	23,787,137	518,990	24,306,127	47.3
접종 완료 ²⁾	10,493,895	318,432	10,812,327	21.1

^{1) 20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의 예방 및 치료 등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진단검 사비와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추진 중
- 광범위한 진단검사와 예방접종을 통해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으나 변이바이러스의 등장 등으로 유행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 최근에는 백신 접종자가 재확진되는 돌파감염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전문기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종식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대두

2.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지원 경과(2020년~2021년 7월 현재)

2020년 들어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국가예산을 재원으로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일부 경감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치료비, 백신접종비를 전액 부담

 의료기관이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치료·예방에 필수적인 비용은 시속히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등 지원

일자	지원내용			
2020.01.04.	코로나19 격리 입원진료 기관에 감염예방관리료 적용			
2020.01.04.	응급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응급의료관리료 적용			
2020.02.03.	코로나19 감염증 치료 약제 보험급여 적용 (2.20일(2차)) * (1차) AIDS·C형 간염 치료제, (2차) 말라리아·인플루엔자 치료제 등			
2020.02.04.	의료기관 현지조사 및 평가 유예			
2020.02.07.	코로나19 확진검사 건강보험 적용			
2020.02.24.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및 진찰료 적용			
2020.02.28.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시행			
2020.03.02.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건강보험 적용			
2020.03.03.	건강보험 급여비 先지급 시행 * 대구·경북(3.3.) → 전국 확대(3.23.) → 약국 확대(4.8.)			

²⁾ 안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일자	지원내용			
2020.03.12.	중증응급센터 격리진료구역 수가지원			
2020.03.17.	특별재난지역 및 취약계층 건보료 경감 (2차 3.30일)			
2020.03.24.	요양병원 등에 한시적 감염예방관리료 지원			
2020.07.23.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선별 50%)			
2020.09.21.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취합검사 급여 적용(선별 50%)			
2020.11.19.	코로나19-독감 동시진단 PCR 검사 급여 적용			
2020.12.14.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선별 50%)			
2020.12.18.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 수가 지원			
2021.01.11.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지원			
2021.03.15.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지원			
2021.05.11.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 한시적 지급			

3.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지원 항목별 재정소요 분석

가. 건강보험 수입 측면: 특별재난지역 및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경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

- 1차로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그 외 지역은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보험료 50%를 경감하고, 2차로 특별재난지역 외의 하위 20~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30% 경감3)
- 2020년 3월~5월. 3개월간 건강보험료 9.115억원을 경감. 이 중 국가 예산으로 2.656억원 지원
 - 이 중 정부는 1차 경감 예상액의 50%인 2.656억원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지원하였고, 그 결과 건강보험료 수입은 6,459억원 감소됨

표 3 코로나19 건강보험료 경감액 및 정부 지원 현황

(단위: 억원)

보험료 경감 구분		대상자(가입자)		경감률	기간	보험료	정부	건강보험 재정
차수	지역	기준	규모	영심팔	기단	경감액(A)	지원액(B)	부담액(A-B)
1차	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료 하위 50%	71만명	50%	3개월	729	381	348
	그 외 지역	건강보험료 하위 20%	533만명	50%	3개월	4,377	2,275	2,102
2차	그 외 지역	건강보험료 하위 20~40%	556만명	30%	3개월	4,009	0	4,009
	합 계				_	9,115	2,656	6,459

주: 소요재정은 보험료 정산분 등을 반영하지 않은 추계치임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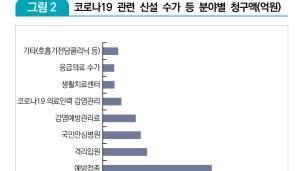
³⁾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특별째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은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계층 71만 명에게 3개월간(3~5월) 보험료 50%를 경감하고, 그 외 지역은 하위 20% 계층(533만명)은 50% 경감, 하위 20~40% 계층(556만 명)은 30%를 3개월간(3~5월)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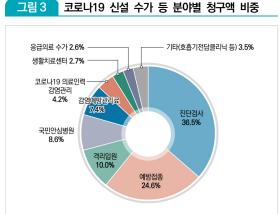
나. 건강보험 지출 측면

(1)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신설 등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확진환자의 격리치료 등을 위해 2021년 기준 12개 분야, 36종의 수가를 신설하고 이들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4)

- 코로나19 수가 항목 신설로 격리치료비 797억 9.100만원. 코로나19 진단검사 2.903억 9.400만원 등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말까지 7.963억 7.300만원이 건강보험 진료비5)로 추가 청구6)
 - ▶세부 수가 항목별 적용 기준일. 진료비 청구액은 [부표] 참조





주: 1) 기타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전화상담관리료, 코로나19 아간간호료, 코로나19환자 혈액투석 진료비 등 포함

1.000 1.500 2.000 2.500 3.000

- 2) 예방접종은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
- 1. 구체적인 신설 수가 항목별 진료비는 [부표] 참조

500

진단검사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청구액 기준으로 규모가 큰 항목은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예방접종 시행비임
 - ► 전체 청구액 중 진단검사와 예방접종비의 비중은 각각 36.5%, 24.6%임
 - 예방접종비의 경우 2021년 2월~7월까지 지급된 금액 기준이며, 2021년 하반기 이후 확대된 예방접종 청구액이 반영될 경우 그 규모는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4)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재3항에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⁵⁾ 건강보험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환자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수치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자료의 특성상 개별 수가항목에 대해 공단부담금을 별도로 산출하기는 어려움. 환자본인부담금 중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된 진료비는 정부가 환자본인부담금 지원

⁶⁾ 건강보험 진료일 기준 2020년 1월~2021년 3월까지 진료된 청구 건을 기준으로 발췌한 자료이며, 2021년 6월 심사결정분까지 반영된 수치임. 다만 수가 항목별로 요양급여 개시일이 다르므로 실제 청구 기간은 수가항목별로 상이함

- 코로나19 진단검사는 기존 유사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인 메르스 검사 수가를 준용하여 건강보험 적용가
 - ➣ 질병관리본부 대응지침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2020.2.7.), 요양병원·정신병원에 신규입원하는 무증상 환자(2020.5.13.)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
 - 2021년 6월말 기준 459만 8천건, 2.977억원이 건강보험 진료비로 지급되었으며, 이 중 1.739억원은 건강보험, 1,018억원은 국가, 220억원은 환자가 부담

표 4 코로나19 진단검사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 현황

(단위: 천명, 천건, 억원)

연도	이워	건수		건강보험 진	료비 청구액	
O.T.	28	간ㅜ	계	공단부담금	국가부담금	본인부담금1)
합 계	3,456	4,598	2,977	1,739	1,018	220
2020년	1,297	1,504	1,150	695	396	60
2021년	2,732	3,095	1,827	1,045	621	161

- 주: 1)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취합검사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진단검사 건에 대한 본인부담금 발생액
 - 1. 2020년 3월~2021년 6월까지 지급된 건을 발췌한 자료임
 - 2. 인원수는 중복을 제거한 수치로 단순합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3.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2021년 2월부터는 위탁의료기관(약 10.000개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자부담률 70%를 적용하여 건강보험에서 부담
 - ▶ 백신구입비, 접종센터 내 접종비 등은 국비로 부담하고 위탁의료기관 접종비》는 국비(30%)와 건강보험 재정(70%)으로 분담
 - ➤ 2021년 6월말 기준 10,205건, 1,961억원이 건강보험으로 청구¹0되었으며, 이 중 1,373억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

⁷⁾ 검사 수가 75,880원(병원)~82,200원(상급종합병원), 상·하기도 검사 각각 가능

⁸⁾ 건강보험재정에서 우선 지원한 후 정부(질병관리청)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

^{9) 1}회 19,220원(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비 준용).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예방 접종 비용으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비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19,220원(2021년 기준)

¹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력 등록 후 질병관리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위탁의료기관으로 시행비(19,220원) 지급

표 5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비 현황

(단위: 천명, 천건,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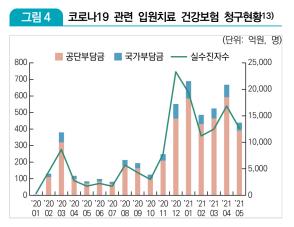
배시조근	OISI	건수	豆	I로나19 예방접종 접종	비
ਜਪੂਰਜ਼	22	인구	계	공단부담금	국가부담금
합 계	10,033	10,205	1,961	1,373	589
AZ	8,914	9,086	1,746	1,222	524
얀센	1,119	1,119	215	150	65

주: 1. 2021년 2월~6월까지 접종이 완료된 건에 대해 지급한 자료를 발췌한 결과임

(2) 코로나19 환자 치료비 지원

코로나19 환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11)

- 2020년 1월~2021년 6월 건강보험에 청구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치료비는 5,064억 2,600만원¹²⁾이었으며, 건강보험이 4.372억 1.400만원, 국가가 692억 1.200만원 부담
 - ▶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13.6일, 진료비는 392만원







^{2. 2021}년 2분기까지 민간위탁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한 백신은 AZ와 얀센 백신 2종이었으며 3분기 이후 화이자, 모더나 백신까지 확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7조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를 위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

¹²⁾ 코로나19와 관련한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소요된 건강보험 진료비로 '코로나19 신설 수가' 항목 이외의 진료비 항목도 포함

¹³⁾ 진료개시일 기준 건강보험 자격으로 코로나19 진료를 받은 입원치료 건에 대한 자료이며, 코로나19 전체 수진환자(확진환자+의사환자)에 대한 현황임. 의료급여 자격 진료건, 비급여 진료건은 포함되어있지 않음



(3) 의료기관 재정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선지급 및 조기지급

- 건강보험 급여비는 요양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면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경우 에는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급여비를 지급14)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감소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던 일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비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선지급 특례 및 조기지급 시행
- (선지급)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100~9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사후 정산은 실제 급여비와의 차액을 3~6개월간 균등 상계
 - 대구·경북(2020.3.3.) → 전국 확대(3.23.) → 약국 확대(4.8.)
 - 대구·경북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 국민안심병원, 환자경유로 일시폐쇄된 약국 등 100%, 그 외는 90%

표 6 의료기관 급여비 선지급 및 상환 현황

(단위: 개소, 억원)

구분	선지급	∄(A) ¹¹	상환	(B) ²⁾	미상환(A−B) ³⁾	
下世	기관	금액	기관	금액	기관	금액
1차	5,514	25,333	5,512	25,318	27	15
2차	1,743	13,715	1,383	4,446	685	9,269

- 주: 1)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신청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전년도 동월 기준 요양급여비(2~3개월분)를 선지급한 기관 및 금액
 - 2) 2021년 6월 30일 기준 실제 급여비와의 차액을 상계하여 선지급 급여비가 상환 완료된 기관수 및 금액
 - 3) 2021년 6월 30일 기준 미상환 기관수 및 금액

자료: 보건복지부

- (조기지급)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 12일(22일→10일) 단축
 - ► 698,636건에 대해 283,803억원 조기지급(2021.6.30. 기준)

^{14)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전망

2020년도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은 전년도 대비 각각 7.9%, 4.1% 증가하였는데, 수입과 지출 모두 정부 전망치를 하회

丑7 2020년 건강보험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2020	년			
	구분 2019년 실적(A)		<u> </u>		전년대비	II(C-A)	계획 대비(C-B)		
		E 16 9	계획 (D)	결산(C)	증감액	증감율	증감액	증감율	
총	수입	680,643	739,725	734,185	53,542	7.9	△5,540	△0.7	
	보험료 수입	587,428	638,145	624,849	37,421	6.4	△13,296	△2.1	
	정부지원금	77,803	86,979	92,283	14,480	18.6	5,304	6.1	
	기타 ²⁾	15,412	14,601	17,053	1,641	10.6	2,452	16.8	
총	지출	708,886	767,000	737,716	28,830	4.1	△29,284	∆3.8	
	보험급여비	690,429	747,745	709,524	19,095	2.8	∆38,221	△5.1	
	관리운영비 등	18,457	19,255	28,192	9,735	52.7	8,937	46.4	
	당기수지	△28,243	△27,275	∆3,531	24,712	-	23,744	-	
	누적수지	177,712	147,044	174,181	∆3,531	-	27,137	-	

주: 1) 2020년 계획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2019.4.30,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재정 전망치

자료: 보건복지부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인해 2020년 수입 증가율(7.9%)은 전년도(9.5%) 대비 소폭 하락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험료 경감으로 보험료 수입 6,459억원 감소15), 보험료 징수율은 전년(99.8%) 대비 0.1% 하락
- 다만, 2020년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부과 특성상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20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 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체 건강보험 지출은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으로 호흡기 및 감염성 질환자가 감소하고 의료기관 이용을 줄이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전년(9.2%) 보다 증가율 둔화(4.1%)

- 2020년 건강보험 급여비를 포함한 총지출은 73조 7.7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8.830억원 증가
- 감기·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및 세균성 장감염·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환자 수 감소1·0

²⁾ 수입 기타는 의료사업, 임대사업 수입 등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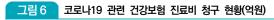
^{1.} 각 년도 현금흐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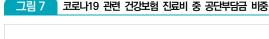
¹⁵⁾ 코로나19 보험료 경감액 총 9,115억원 중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2,656억원을 차감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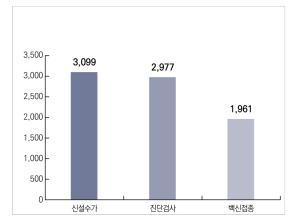
- > 감기(△47.0%). 인플루에자(△97.4%). 폐렴(△63.6%) 등 호흡기감염 환자수 △48.1% 감소
- ► 세균성 장감염 질환 △30.9%, 중이염 △45.6%, 결막염 △17.8%로 환자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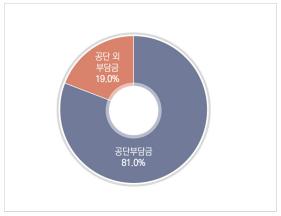
반면에 2020년 코로나19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신설된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 감염병 관리 분야 등에서의 지출은 증가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수가 신설,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 발생
- 2021년에는 백신 접종비¹⁷⁾와 의료인력 감염관리 수당¹⁸⁾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여 코로나 19와 관련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19)
 - ≥ 2021년 6월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코로나19 관련 진료비는 총 8,037억원²⁰⁾이며, 이 중 공단부담금은 81% 수준21)이며, 나머지 19%는 대부분 국가 지원(일부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









주: 신설수가는 2020년 1월~2021년 3월 진료건, 백신접종과 진단검사는 2021년 6월 진료건까지 발췌한 자료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6) &}quot;코로나19 상황에도 '20년 건강보험 재정,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 운영"(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2021.2.15.)

¹⁷⁾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자료에서 건강보험법령상 예방목적의 진료는 비급여 대상이나, 코로나19 대응상황임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2021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1.1.29.). 이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비' 한시적 적용 수가를 신설하고 위탁의료 기관(약 10,000개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자부담률 70%를 적용하여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함(환자 본인부담금액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예산으로 지원)

¹⁸⁾ 정부는 코로나환자 치료 원소속 의료인력 대상 감염관리수기를 신설하고 정부 예산(50%)과 건강보험재정(50%)을 합산한 960억원을 의료인력 지원 수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3.25.)

¹⁹⁾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1.1.29.) 보고자료에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소요는 접종인원 1,500만명(2,500만 회) 기준 3,364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음

²⁰⁾ 코로나19 관련 신설 수가 청구액은 2020년 1월~2021년 3월 진료건까지 반영된 결과임

²¹⁾ 코로나19 관련 신설 수가 항목이 포함된 진료명세서 5,351,389건을 분석한 결과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건강보험 진료일 기준 2020.1.1.~2020.12.31. 청구자료 분석 결과)

코로나19의 확산은 호흡기 질환 등에서 의료이용의 감소 등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접 치료 및 관리 비용 부담의 증가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중장기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에 미칠 영향은 향후 면밀한 검토 필요

- 중증질환, 만성질환 등 필수적 진료가 필요한 부분에서 발생한 의료이용의 감소는 질환 발생, 잠복 후 악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상존
- 코로나19 장기화는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치료비 부담, 변이바이러스 발생 대응을 위한 예방접종 확대 등 향후 건강보험 지출 증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4. 코로나19 건강보험 지원 관련 이슈

(1) 의사결정 방식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 건강보험료 경감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추가 부담 등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결정

- 보험료 감면 대상. 감면 비율. 정부 지워비중 등 건강보험 재정과 가입자 부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될 사안에 대해 실질적 부담주체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논란
 - ▶ 「국민건강보험법」제4조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0.5.15.)에서 보고사항으로 건강보험 보험료 경감을 포함한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내용'을 사후 보고
 -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는 2021년 제10차 회의(2021.05.07.) 부대 결의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분 등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 표명
- 이에 대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보험료 경감액의 일부(29%)를 지워²²)하였고, '제3차 비상경제회의²³)'에서 부처간 협의를 하였다는 입장
 - ▶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발표(2020.3.20.) 후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를 개정(2020.4.9)하고 보험료 감면 시행

²²⁾ 총 경감액 9,115억원 중 2,656억원 지원

^{23) 2020.3.30}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 개최하여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배포.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보험료 하위 20~40%에 대해 3개월(2020.3~5월)간 건강보험료 30% 감면 결정

건강보험 수가의 신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 관이 고시하여야 하나 일부 사항은 결정 후 사후보고로 갈음

- 코로나19 관련 수가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행정예고
 - ▶ 정부는 급변하는 코로나19 상황에 적기 대응한다는 적시성을 사유로 일부 코로나19 수가의 경우 우선 적용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사후 보고*
 - *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내용 보고'(2020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0.5.15.),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예방접종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 방안'(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1.2.23.)

(2) 비용의 부담 주체

코로나19는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의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에 이르는 등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규정²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예방 및 치료의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에서 지출되었으며, 이는 향후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 건강보험법령상 예방접종은 비급여 대상25)이나.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코로나19 예방접종비의 일부를 건강 보험에서 부담
 - ➣ 민간 위탁 의료기관의 백신 접종 비용의 70%는 건강보험(국고 30%)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접종인원 1,500 만명(2,500만회) 기준 3,36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26)

(3)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 마련

노령화, 만성 질환 증가,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지난해 적자폭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 반영되는 2021년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규모 확대 예상

●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지출은 델타변이 등 유행.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백신 접종대상자 및 횟수(booster shot) 확대 필요성에 따라 당분간은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64조(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에서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제70조 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등에서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25)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별표2

^{26) &#}x27;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접종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 방안'(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1.2.23.)

● 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규제, 고용 불안정 및 실업률 증가는 보험료 수입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정부 시책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 항목별로 그 재원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중장기적 지출 규모를 예측함으로써 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정부의 지원예산 규모 편성 등에 반영토록 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은 국가예산이 아닌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대응 정부 시책에 따라 발생한 보험료 경감액 및 검사비·치료비 지원의 중장기 지출 규모를 산정하고, 관련 비용은 가입자 보험료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할 필요가 있음27)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의5에서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동 조항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치료비 및 입원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이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하도록 규정

[부표] 코로나19 관련 신설된 건강보험 수가 항목

(단위: 백만원)

구분	신설된 수가 항목 주요 내용	신설 수가명	시행일	청구액			
코로나19 중증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치료하는 경우 수가산정	①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②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③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2020.03.23.	45,811			
확진환자 치료지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운영하여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치료하는 경우 수기산정	①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②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2020.12.18.	29,656			
신규입원 환자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수가산정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2020.05.13.	4,323			
국민안심 병원	병원방문부터 입원까지 호흡기 환자의 진료과정을 분리하여 진료하는 경우 수기산정	①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입원) ②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일반/음압)	2020.02.22.	68,212			
고위험집 단 등	코로나19 확진환자 등 격리 입원진료 기관에 1등급 수준의 수가산정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2020.01.04.	1,127			
감염예방 관리료	고위험집단의 감염예방관리를 위하여 수가 산정	①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②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2020.03.24. 04.11.	58,021			
전화상담 관리료	지역 내 경증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전화상담 확산을 위해 수가산정	의원급 전화상담 관리료 신설	2020.05.08.	4,003			
생활치료 센터	경증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우 수기산정	①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I, II (20.3.2. 신설, 20.12.21. 인상) ②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III (20.12.21 신설)	2020.03.02.	21,115			
중증응급 진료센터	중증환자 적극 수용을 위해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에서 별도 격리진료구역 내 진료한 경우 수가 산정	① 격리진료구역 관찰료-권역/지역 응급센터 ②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음압/일반	2020.03.12.	20,727			
호흡기 전담 클리닉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호흡기감염 동시 유행대비하여 수가산정 (의료기관형클리닉)	①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②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③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관리료	2020.07.13.	19,690			
혈액투석 환자 치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혈액투석환자의 치료 강화를 위한 수가산정	①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② 입원환자 혈액투석시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 석료'	2020.12.24.	584			
		①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2020.02.07.	266,307			
		②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07.23./08.06.	2,253			
	코로나19 진단검사	③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09.21.	19,373			
		④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11.19.	1,137			
		⑤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1,325			
	코로나19 (야간간호료	2021.1.11.	3,224			
	코로나19 대응 의료인		2021.5.11.	33,385			
	코로나19 백신접종비 ¹⁾ 2021.2.						
합 계							

주: 1) 예방접종은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

^{1.} 건강보험 진료일 기준 2020년 1월~2021년 3월 진료분(2021년 6월 심사결정분까지 반영), 일부 항목은 2021년 6월 진료분까지 반영된 결과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OECD 주요국의 가족정책 지출 및 지표 비교 분석 - 합계출산율 상승기 전후를 중심으로

이 윤 경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742)

1. 개요

OECD 회원국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다양한 '가족정책'을 추진 중

- 저출산은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미래의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으로 이어져 사회·경제적인 문제 초래
- 가족정책은 주로 공공사회복지지출 중 저출산 극복과 관련한 "가족영역에 대한 지출"(이하 "공공가족지출")을 통하여 추진1)

OECD 회원국의 공공가족지출 현황 및 관련 지표 등에 대한 비교 분석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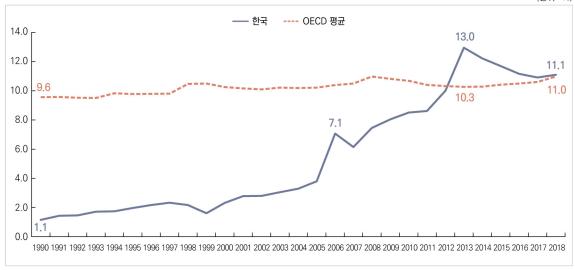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2010년 1.23명, 2020년 0.8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2)
 -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전체 공공사회복지지출 중 공공가족지출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3년부 터 OECD 평균 이상의 지출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그림 1] 참조). 출산율은 계속 하락
- OECD 사회복지지출통계(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및 가족통계(Family Database; FD) 자료를 통하여 출산율을 회복한 경험이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공공가족지출과 가족정책의 주요 지표를 비교분석

¹⁾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위는 기관 및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제시하고 있는데, 협의로는 전통적으로 가족이 수행하던 기능을 지원・대체하는 것, 광의로는 가족의 형성과 해체(결혼, 이혼, 출산, 입양 등) 과정에 대한 일체의 개입으로 볼 수 있음. 다만, OECD SOCX와 FD의 공공가족지출에서 가족수당(현금지원 정책)과 산전후휴가(현금지원 정책), 영유아 교육·보육·돌봄(현물지원 정책)의 비중이 82.6%(2017년 기준)에 달한다는 점에서 가족정책을 양육지원정책, 저출산대응정책 등으로 명명하기도 함

²⁾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로,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지속되면 저출산,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경우 초저출산으로 분류

그림 1 공공사회복지지출 중 공공가족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사회복지지출 통계(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3)

- OECD는 회원국의 사회보장 현황을 파악하고 지출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기본통계로 SOCX를 구축·발표4)
- 사회복지지출의 성격을 9대 정책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별 급여유형을 현물과 현금으로 구분하는데, 9대 정책영역 중 공공가족지출은 자녀양육 및 기타 부양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과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관련 돌봄** 등 서비스 급여로 구성
 - * 노인(old-age), 유족(survivors), 근로무능력(incapacity-related benefits), 보건(health), 가족(family), 적극적노동시장정책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실업(unemployment), 주거(housing), 기타 사회정책(other social policy areas)
 - ** 노인이나 장애인 관련 돌봄은 노인 및 근로무능력 영역으로 분류하므로 공공가족지출에서 제외

OECD 가족통계(Family Database: FD)

- OECD는 회원국의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실태, 정부지출, 성과 등을 공유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계로서 FD를 2006년부터 구축·발표⁵⁾
- FD에 의하면, 가족정책(policies for families with children)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원을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정의되며, 목표는 ① 자녀 출산 및 양육의 장애요인 제거, ② 일·가정 양립 지원, ③ 여성 잠재인력의 적극적 활용, ④ 가족의 빈곤 감소, ⑤ 아동발달 강화, ⑥ 양성평등 증진

[부표 1] OECD 가족통계(Family Database) 분류 및 지표

대분류(4) 및 중분류(13)	소분류(70)
'족 구조(The structure of families)	
가족과 아동 (Families and Children)	가족규모와 구성, 가족 내 아동, 아동의 생활환경에 대한 추가 정보 아동 연령별 인구 및 청소년 부양비, 아동의 생활조건
출산 지표 (Fertility indicators)	출산율, 이상적인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출산 시 산모의 연령 및 연령별 출산율, 혼외 출생률, 무자녀
혼인과 동거상태 (Marital and partnership status)	혼인율과 이혼율, 가족해체와 자녀, 동거율과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 비율, 가정폭력
 족의 노동시장 지위(The labour market position of fam	ilies)
가족, 아동과 고용상태 (Families, children and employment status)	고용상태별 가구 내 아동, 어머니의 고용, 파트너십 상태별 모성 고용, 생애주기별 고용프로필, 성별 급여격차와 교육수준별 소득 차이, 고용 결과에서 성별 차이
근로시간과 돌봄에 소요하는 시간 (Workplace hours and time for caring)	남녀 주당 평균 근로시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분포, 편부모의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분포, 가족친화적 직장 관행, 근로와 돌봄, 가사에 소요되는 시간, 여가시간,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주관적 웰빙과 만족도
'족과 아동에 대한 공공정책(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	and children)
유자녀 가족에 대한 일반정책 (General polici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가족급여에 대한 공공지출,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가족현금급여, 세금/급여 시스템의 중립성, 아동지원시스템, 아동 연령별 공공지출 세대간 연대, 아동에서 성인 전환에 관한 법적 연령, 아동보호 측면
아동 관련 휴가 (Child-related leave)	부모휴가시스템의 핵심적인 특징, 출산휴가 이용, 맞벌이부모의 추가적인 휴가 이용, 육아휴직 대체율, 산전휴가 동향
어린 영아에 대한 공식적인 보육 및 교육 (Formal care and education for very young children)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록율, 비공식 보육제도, 보육지원
보육시스템 유형 (Typology of childcare systems)	보육과 유아교육서비스의 유형, 보육과 유아교육서비스의 질, 방과후보육
동성과(Child outcomes)	
아동건강(Child health)	영아사망률, 출생 시 기대수명, 저체중 출산, 백신율, 모유보급율, 질병관련통계(아동 당뇨병과 천식), 11세, 13세, 15세의 성별 과체 및 비만, 11, 13, 15세의 성별 흡연자, 아동장애
아동빈곤(Child poverty)	소득 불평등과 가구유형별 소득지위, 아동빈곤, 유자녀가정의 물질적 결
교육/기초문해(Education/literacy)	성별 학력 및 정규교육 예상기간, 학문분야별 대학졸업자들의 성별 차 10세, 15세의 기초학력 점수, 교육/고용상태에 있지 않은 청소년, 이민자 학생 비율 및 교육 성과
사회참여(Societal participation)	15~29세 청년의 자원봉사 및 NGO 참여, 생애 첫투표 참여율, 청소년의 성별 알코올 및 대마초 소비, 10대 자살

³⁾ OECD SOCX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NABO 추계&세제이슈"(통권 제30호, 2021년 2월 26일 발간) 참조

⁴⁾ OECD SOCX 기준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 지출과 사회보험을 모두 포함하나, 우리나라에서 OECD에 제출하는 공공사 회복지지출 통계에는 지방정부 자체사업 지출이 누락되어 있음. 따라서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이 공공가족지출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공공가족지출보다 과소 계상되어 국가 간 직접 비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⁵⁾ OECD는 OECD 및 EU의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취합·정리하여 2006년에 Family Database를 공개하고 2008~2009년에 기존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한국은 OECD의 요청에 따라 2009년부터 관련 통계를 제출하고 있음

2. OECD 회원국 출산율 현황 및 비교 대상 국가 선정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은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으며, 한국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초저출산 국가에 해당

- 2019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61명. 한국은 0.92명으로 38개국 중 최하위
 - 2019년 기준 이스라엘(3.01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모두 2.1명 이하로 저출산 국가에 해당하며, 그 중 한국(0.92명)은 초저출산 국가에 해당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비교(2019년 기준)

(단위: 명) 3.5 3.01 3.0 2.5 2.0 1.5 1.0 0.5 0.0 록셈부르크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떠 꾦

자료: OECD Family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1960년 이후 급격하게 하락 추세였던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00년대 초반부터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다시 하락하는 추세(OECD 평균 참조)이
 - ➤ OECD 회원국들 중 한국, 멕시코, 터키는 1960년에 합계출산율이 6명 이상이었으나, 지난 60년간 가장 급격하게 합계출산율이 하락한 국가는 한국(1960년 6명 → 2019년 0.92명)
 - ➤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현재의 합계출산율 하락 추세를 감안하는 경우 2040년에 0.73명에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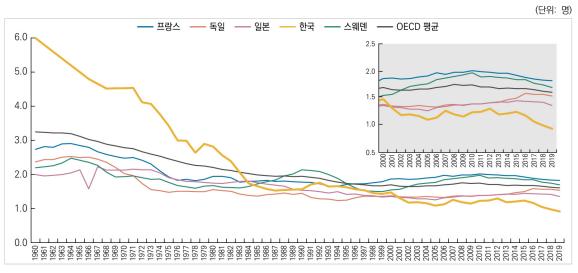
⁶⁾ 프랑스는 2010년 2.02% → 2019년 1.83%, 스웨덴은 2010년 1.98% → 2019년 1.70%, 독일은 2016년 1.59% → 2019년 1.54%, 일본은 2015년 1.45% → 2019년 1.36%로 소폭 감소

⁷⁾ 국회예산정책처(2021),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020~2040」, 경제현안분석 제100호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회복을 경험한 국가를 선정하여 공공가족지출 및 가족정책 지표 비교

-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한 경험이 있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4개국을 분석 대상 국가로 선정
 - 독일은 1992~1995년, 일본은 2003~2005년에 초저출산이었으나, 독일은 2016년(1.59명), 일본은 2015년 (1.45명) 합계출산율 회복 경험
 - 프랑스는 1994년 1.66명에서 2010년에 2.02명, 스웨덴은 1999년 1.5명에서 2010년 1.98명으로 각각 합계출산율 회복 경험

그림 3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1960~2019년



자료: OECD Family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서정된 분석 대상 국가의 합계출산율 자료를 토대로 상승기와 하락기를 설정하여 각 시기별 평균 공공가족지출 및 가족정책 지표를 비교
 - ▶ 4개국의 최근 합계출산율 저점과 고점을 '상승기'로 설정하고 상승기 전후로 '상승 전 하락기'와 '상승 후 하락기'설정
 - ▶ (상승 전 하락기) 상승기에 도달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합계출산율이 하락한 시기로, 상승기와 동일한 기간 설정
 - ▶ (상승기) 4개국이 합계출산율을 회복한 시점과 그 전의 합계출산율 저점 사이의 시기
 - ▶ (상승 후 하락기) 상승기 이후 2019년까지 4개국 모두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시기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상승기 및 하락기

(단위: 명)



- 주: 1. 괄호() 안은 각 시점별 합계출산율
 - 1) 프랑스의 상승 전 하락기는 상승기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할 경우 1977년부터여야 하나,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자료가 1980년부터 제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1980년을 상승 전 하락기의 시작점으로 설정
 - 2) 독일의 상승 전 하락기는 상승기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할 경우 1995년부터여야 하나, 당시(1992~1996년) 합계출산율이 소폭 증감을 반복하여 주변 연도 중 고점이었던 1997년을 상승 전 하락기의 시작점으로 설정

자료: OECD Family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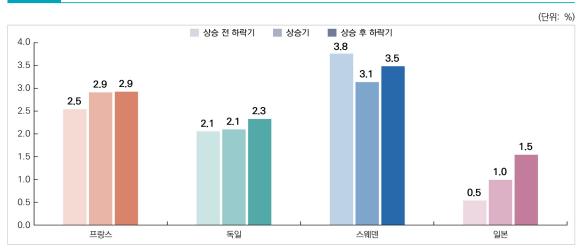
3. OECD 주요국의 공공가족지출⁸⁾ 비교

OECD 주요국의 상승 전 하락기, 상승기, 상승 후 하락기의 GDP 대비 공공가족지출 비율(이하 "공공기족지출 비율") 평균을 비교한 결과, 스웨덴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모두 상승

● 스웨덴은 상승 전 하락기에 공공가족지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합계출산율 상승기에 공공가족지출 비율이 낮아지다가 상승 후 하락기에 다소 높아지는 양상

⁸⁾ OECD 사회복지지출 통계(SOCX)에서 정부의 직접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의 공공가족지출로서 현금 지원, 현물(서비스) 지원이 해당되며, 간접적 지원 방식인 세제 혜택은 제외한 수치임

그림 5 주요국의 GDP 대비 공공가족지출 비율 추이



주: 1. 프랑스는 2018년, 나머지 국가는 모두 2017년 데이터 2. 2017년까지의 데이터는 확정치이며, 2018년 데이터는 잠정치임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프랑스와 독일의 공공가족지출은 대체로 현금지원 비중이 높았으나 차츰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고, 스웨덴은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의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점차 현물지원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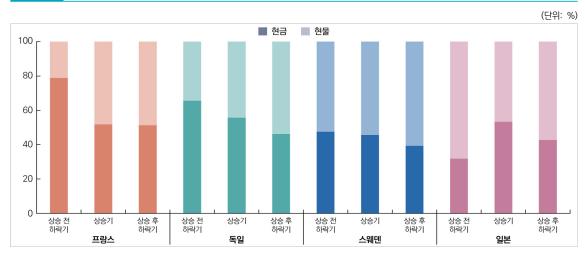
- 각 국가는 정치·경제·사회적 상황과 사회의 지배적 가치, 그리고 정책목표에 따라 급여방식을 혀금 또는 현물로 결정의
 - ➣ 현금지원은 아동의 양육비용을 보전하거나 직장여성 및 남성의 육아휴직급여 등을 통하여 자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의 정책10)
 - 현물지원은 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자녀 양육의 부담을 사회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유인 제공 목적의 정책
- 프랑스와 독일의 공공가족지출에서 그동안 현금지원의 비중이 높았던 이유는 0~2세 영유아의 양육은 가정에 서 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아동수당 등의 현금지원 방식을 통하여 가정양육을 지원하였기 때문
 - 이후 가족수당 지출 규모를 축소하고 0~2세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면서 현물지원의 비중이 확대됨
- 프랑스의 경우 상승 전 하락기에 78.96%에 달하던 현금지원의 비중이 상승기에 51.98%, 상승 후 하락기에 51.45%로 감소
 - ➣ 프랑스는 재정적자로 인하여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공공가족지출을 감축(공공가족지출 비율 1998년 3.29% → 2018년 2.85%)

⁹⁾ 사회보험이 발달하고 소득보장정책을 중시하는 국가는 대체로 현금급여를, 공공재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거나 사회복지지출을 적게 지출하는 국가는 대체로 현물급여를 선호

¹⁰⁾ 수당은 대체로 부모의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여성의 돌봄 노동을 보상하는 특성이 강하며, 고용 상태에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는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

- 2015년에는 대표적인 현금지원 정책인 가족수당을 개혁하여 보편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을 지원대상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기 시작
- 독일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상승 전 하락기에 65.79%였던 현금지원의 비중이 상승기에 55.81%, 상승 후 하락기에 46.35%로 꾸준히 감소
 - ▶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기존의 가족정책 목표를 2000년대 이후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전환하면서 아동돌봄 및 보육서비스 등의 현물지원11) 확대
- 스웨덴은 상승 전 하락기에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의 비중이 유사하였으나 상승기에 공공가족지출 규모 축소 상황에서 현금지원의 비중이 점차 감소
 - 4~5세 아동 무상교육(2003년), 개인 탁아소 운영 시 보육비용 제공(2006년), 6세 아동 취학전 교육 무상제 공(2009년) 등의 현물지원 확대가 주요 요인12)
- 일본의 경우, 상승 전 하락기에 우세했던 현물지원 비중을 줄여 상승기에 현금지원 비중을 높였다가 상승 후 하락기에 다시 현물지원 비중을 높임
 - 일본은 1995년부터 육아휴직 소득보장(25%)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2001년 이후 소득보장 수준이 67%까지 단계적으로 향상되면서 현금지원의 비중이 높아짐
 - ▶ 2015년에 아동 돌봄 본부를 내각부에 설치하고 아동돌봄 및 보육서비스 등의 현물지원을 확대

주요국 가족지출의 구성 변화 그림 6



주: 1. 프랑스는 2018년, 나머지 국가는 모두 2017년 데이터까지 사용 2. 2017년까지의 데이터는 확정치이며, 2018년 데이터는 잠정치임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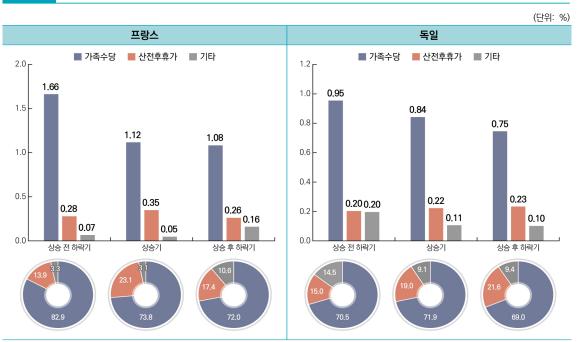
^{11) 2008}년에는「아동지원법」시행으로 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원을 크게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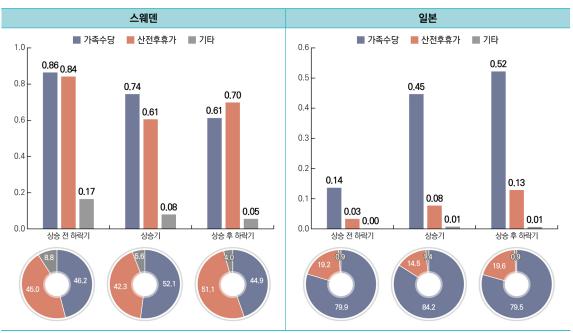
¹²⁾ 배정아 외(2019), 「주요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비교 연구」, 감사연구원·감사원

현금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스웨덴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아동·양육수당 등 가족수당 지원이 우세

- 가족영역의 지출에서 현금지원은 가족수당과 산전후휴가. 기타 현금성 지원의 세 유형으로 구분
 - ▶ 가족수당(family allowances):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수당
 - ➤ 산전후휴가(maternity and parental leave):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 ▶ 기타 현금지원(other cash benefits): 위 두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현금성 지원으로서 국가마다 지원내용 에 차이(ex. 자영업자 현금급여, 저소득층 가족보조금,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 스웨덴은 재정악화로 가족수당을 포함한 현금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중시하는 사회민주 주의 기조에 따라 현금지원 중 산전후휴가의 비중을 확대
- 프랑스, 독일, 일본은 현금지원 중 가족수당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와 독일 모두 현금지원 중 가족수당의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GDP 대비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
 - ➣ 두 국가 모두 전통적으로 보편적 성격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추가적 으로 지원하고 있어 가족수당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 일본은 아동수당 도입이 가족지출의 급격한 증가의 주요 요인이었으며, 2009년 민주당 집권으로 소득제한 삭제, 대상 확대, 급여 수준 인상 등 제도를 확대하였으나, 2011년 발생한 동일본지진의 복구비용 충당을 위하여 아동수당 제도를 다시 축소

주요국의 현금지원 정책 구성 추이





- 주: 1. 막대그래프 수치는 GDP 대비 비율, 원형그래프 수치는 현금 지출 대비 비중
 - 2. 프랑스는 2018년, 나머지 국가는 모두 2017년 데이터까지 사용
 - 3. 2017년까지의 데이터는 확정치이며, 2018년 데이터는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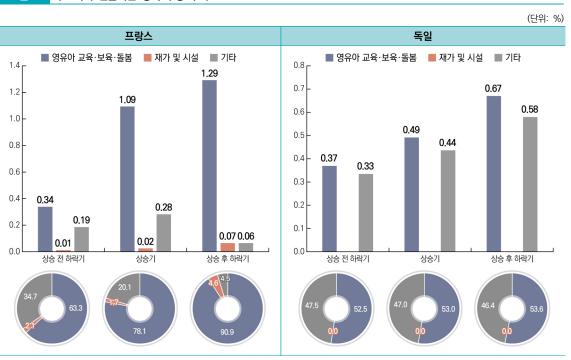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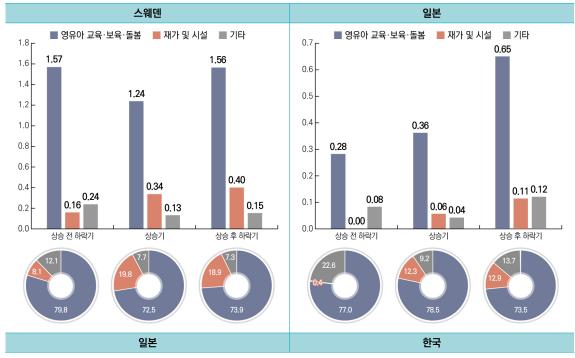
현물지원 정책의 경우, 주요국 모두 "영유아 교육·보육·돌봄"(이하 'ECEC')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가족영역에서 현물지원은 ECEC와 재가 및 시설, 기타 현물성 지원의 세 유형으로 구분
 - ➣ 영유아 교육·보육·돌봄(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ECEC): 출생 이후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 보육, 돌봄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자녀돌봄지원제도에 해당
 - ➤ 재가 및 시설(home help/accomodation): 아동생활시설, 한부모생활시설 등 재가 및 시설 관련 지원
 - ▶ 기타 현물지원(other benefits in kind): 위 두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현물성 지원으로서 국가마다 지원내용에 차이(ex. 위탁양육, 아동급식지원, 아동학대 관련 지원 등)
- 주요국의 평균 추이를 보면 ECEC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나, 스웨덴은 다소 예외적 양상
 - ▶ 스웨덴은 주요국 중에서도 GDP 대비 ECEC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보육지원을 복지정책이 아닌 사회정책으로 간주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2002년부터 3~6세의 모든 아동에게 무상보육 및 교육을 제공하고, 2016년부터 지원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2~6세의 모든 아동을 지원
 - ➤ 프랑스의 경우 0~2세 영아보육은 고용·노동·건강부에서. 3~5세 유아교육은 교육부에서 이원화하여 지원 하고 있으며, 특히 유아교육은 보편지원으로 프랑스 유아의 98%가 유치원에 등록하는 등, ECEC 지원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 독일도 ECEC 지출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나, 기타 현물지원 비중이 높은 점은 다른 국가와 차별되는 특징
 - > 2017년 기준 GDP 대비 기타 현물지출 비율은 0.58%(프랑스 0.08%, 스웨덴 0.15%, 일본 0.12%)
 - ▶ 기타 현물지원 정책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을 위한 지역동맹'정책이 포함되며, 이에는 지역동맹으로 근로자를 위한 보육시설 설치, 아동의 놀이시설 설치 등이 해당
 - ▶ 일본 또한 보육의 양적 확대 및 보육서비스의 질 강화를 목적으로 지역의 양육센터 정비를 실시하면서 상승 후 하락기에 기타 영역에서의 현물지원이 확대됨

그림 8 주요국의 현물지원 정책 구성 추이





- 주: 1. 막대그래프 수치는 GDP 대비 비율, 원형그래프 수치는 현물 지출 대비 비중
 - 2. 프랑스는 2018년, 나머지 국가는 모두 2017년 데이터까지 사용
 - 3. 2017년까지의 데이터는 확정치이며, 2018년 데이터는 잠정치임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주요국의 가족정책 지표 비교

출산 및 육아휴직의 법정유급휴가의 최대기간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변화가 있었고, 스웨덴은 소폭 증감, 일본은 변화가 없으나, 소득대체율 등 지원 내용은 국가별로 큰 차이

- 프랑스는 1990~2003년 동안 유지되어온 16주의 출산·육아휴직 기간을 2004년 이후 42주로 확대하였으며. 양육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3년간의 육아휴업을 인정하고 1년만 육아휴업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을 40% 증액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에 프랑스 여성(25~54세)의 경제활동참여율은 83.1%로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에 해당
- 독일은 2000년까지 출산·육아휴직 기간이 109.3주로 상승 전 하락기의 평균 기간이 높았으나 2001년부터 현재까지 58주로 지속되면서 상승기와 상승 후 하락기의 출산·육아휴직 기간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 ▶ 출산 전후로 14주의 출산휴직과 급여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3년간 육아휴직 기간 중 1년(시간제 근무인 경우 2년) 동안 급여의 65%를 양친수당으로 지급

- 스웨덴은 상승 전 하락기와 상승기, 상승 후 하락기 시기를 통틀어 출산·육아휴직 기간이 52~60주로 소폭 증감을 반복
 - ▶ 스웨덴은 1974년에 제정된 「부모휴가법」에 따라 부모휴가를 보편지원하고 있으며, 관대한 소득보장 구조로 설계13)된 육아휴직제도 운영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 중
- 일본은 출산 전후로 14주의 출산휴직과 급여의 2/3를 지원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개시 후 180일 간 급여의 67%, 그 이후 급여의 50%를 지급
 - ▶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1990년대부터 급여대체율과 유급휴직 기간을 축소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1990~1994년까지의 유급휴직기간은 63주였으나 1995~2001년까지 58.7주로 축소 하였고, 2000년대에 경제회복기에 들어서고 2000년 출산율이 1.54까지 하락하면서 2002~2015년까지 60주로 휴직기간을 연장, 2016년부터 다시 55.7주로 휴직기간을 축소
- 참고로, 주요국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남성 법정유급휴가 최대기간은 동일하게 증가하는 추세

주요국의 여성 및 남성 법정유급휴가 최대기간 추이 그림 9



자료: OECD Family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¹³⁾ 일정 임금소득 기준 충족 시 월 임금소득의 약 77.6%를 390일 동안 지급하고 90일간은 하루 180크로나의 정액 급여를 지급하며, 무소득자의 경우에도 하루 250크로나의 기본급여 지급

[참고자료]

완전비율등가(full-rate equivalent)는 국가별로 소득의 정률 또는 정액을 지급하는 등 급여의 수준과 방법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간 비교를 위하여 OECD FD가 각국의 소득대체율(평균임금 대비 휴직급여의 비율)과 유급휴가기간 정보를 바탕으로 100% 급여율로 환산한 유급휴가기간

[부표 2] 주요국 유급휴가기간 완전비율등가(2018년 기준)

(단위: 주, %)

국가	완전비율	을하(A)	법정유급휴가	최대기간(B)	법정유급휴가 최대기간 대비 완전비율등가(A/B)		
五八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프랑스	18.0	5.4	42.0	28.0	42.9	19.2	
독일	42.6	5.7	58.0	8.7	73.4	65.0	
스웨덴	34.6	10.8	55.7	14.3	62.1	75.7	
일본	35.8	30.4	58.0	52.0	61.6	58.4	

자료: OECD Family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0~2세 영유아보육서비스 이용률"14)과 "3~5세 아동교육서비스 이용률"15)은 주요국 모두 증가 추세

- 주요국 모두 2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라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
 - ▶ 그가 대부분의 국가들은 0~2세 영아기에는 육아휴직과 아동수당 등의 제도를 통하여 가정양육을 지워하고 3세부터 국가 차원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
 - 이에 독일과 일본 모두 2005년 기준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각각 16.8%, 16.2%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8년 에는 각각 37.7%, 32.6%로 약 2.0~2.2배 증가
 - ≫ 반면, 프랑스와 스웨덴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2005년 기준 각각 43.9%, 39.5%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았으며, 2018년에 각각 57.5%, 46.3%로 1.2~1.3배 증가
- 독일과 스웨덴은 상승기에 3~5세 아동교육서비스 이용률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가 이후 2018년에 소폭 낮아지는 양상

^{14) &}quot;0~2세 아동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15) &}quot;3~5세 아동 유아교육서비스 이용률"은 가족의 보존을 위한 제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며, 일반적으로 3세 미만 영아의 존재는 여성들의 노동시 장 경력을 단절시키는 원인으로 꼽힘

주요국의 영유아보육서비스 및 아동교육서비스 이용률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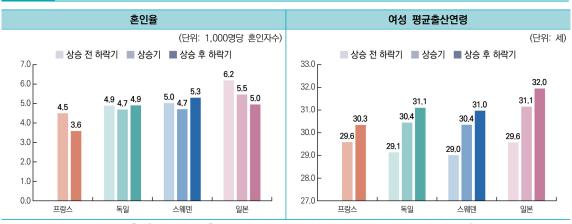
- 주: 1. 2005년부터 가용자료가 공개되고 국가별로 연도별 결측치가 다수 포함되어 단년도 자료로 비교
 - 2. 국가별 비교 시점은 시작점인 2005년과 최근 시점인 2018년을 기준으로 하되, 중간 연도는 각 국가별 상승기 고점 연도로 설정
 - 3. 영유아보육서비스 이용률의 국가별 비교 시점은 프랑스 2005년, 2010년, 2018년, 독일 2005년, 2016년, 2018년, 스웨덴 2005년, 2010년, 2018년, 일본 2005년, 2015년, 2018년이며, 이때 독일과 일본은 각각 2016년과 2015년 자료 부재로 2017년 자료 사용
 - 4. 아동교육서비스 이용률의 국가별 비교 시점은 프랑스 2005년, 2010년, 2018년, 독일 2005년, 2016년, 2018년, 스웨덴 2005년, 2010년, 2018년, 일본 2005년, 2015년, 2018년이며, 이때 스웨덴은 2010년 자료 부재로 2013년 자료 사용

자료: OECD Family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요국의 각 시기별 혼인율 및 여성 평균출산연령 변화를 살펴보면, 혼인율은 'V'자 또는 지속적 하락 추세를 보이고, 여성 평균출산연령은 주요국 모두 증가하는 추세

- 독일과 스웨덴은 상승 전 하락기에 비해 상승기에 혼인률이 소폭 하락했다가 상승 후 하락기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으로 'V'자 추세
- 프랑스와 일본은 혼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주요국의 혼인율 및 여성 평균출산연령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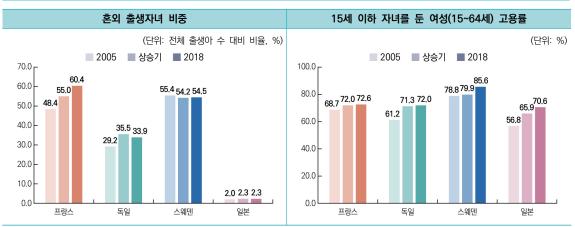


주: 프랑스의 경우 1994년 이전 혼인율 및 여성 평균출산연령 자료가 부재하여 상승 전 하락기의 두 지표는 그래프에 불포함 자료: OECD Family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혼외 출생자녀 비중의 경우 프랑스와 스웨덴의 혼외 출생자녀 비중은 과반, 독일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며, 15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기 여성의 고용률은 주요국 모두 증가하는 추세

- 주요국 중 서구 국가는 대체로 혼외 출생자녀의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전체 출생아 수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하고 있어 혼외 출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요인 중 하나로 설명되고 있음
 - ➣ 실제로 프랑스는 2006년에 「가족관계법」 개정을 통하여 혼외출생아에 대한 신분상 차별 금지를 법제화 하였으며, 혼외출생아에 대해서도 가족수당과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음
 - ▶ 독일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혼외출산을 제도권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상승기에 혼외 출생자녀의 비중이 35.5%까지 증가함
 - ➣ 스웨덴은 상승 후 하락기에 혼인율이 증가함에 따라 혼외 출생자녀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아시아 국가인 일본은 혼외 출산에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혼외 출생자녀에게 비우호적인 사회규범 및 사회안전망으로 혼외 출생자녀의 비중이 서구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주요국 모두에서 15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기(15~64세)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하는데, 이는 ECEC 지원 확대 외에도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의 요인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음

그림 12 주요국의 혼외 출생자녀 비중 및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변화



- 주: 1. 2005년부터 가용자료가 공개되고 국가별로 연도별 결측치가 다수 포함되어 단년도 자료로 비교
 - 2. 국가별 비교 시점은 시작점인 2005년과 최근 시점인 2018년을 기준으로 하되, 중간 연도는 각 국가별 상승기 고점 연도로 설정
 - 3. 혼외 출생자녀 비중의 국가별 비교 시점은 프랑스 2005년, 2010년, 2018년, 독일 2005년, 2016년, 2018년, 스웨덴 2005년, 2010년, 2018년, 일본 2005년, 2015년, 2018년
 - 4. 유자녀 여성 고용률의 국가별 비교 시점은 프랑스 2005년, 2010년, 2018년, 독일 2005년, 2016년, 2018년, 스웨덴 2005년, 2010년, 2018년, 일본 2005년, 2015년, 2018년이며, 이때 스웨덴은 2005년 자료 부재로 2009년 자료 사용

자료: OECD Family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요약 및 시사점

국가별 공공가족지출은 당시 재정 여건과 사회·경제적 환경 및 돌봄에 대한 기본 관점 등에 따라 변화

- 스웨덴은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 국가로서 보편주의를 지향하면서 복지시스템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
 - ▶ 스웨덴은 2000년대 이후 재정악화를 경험하면서 상승기에 공공가족지출 규모를 축소하였으나 주요국과 비해 높은 수준의 공공가족지출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가족 양립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산전후휴가 확대 및 아동돌봄 및 보육서비스 지원(ECEC) 정책으로 전환하는 양상
 - ▶ 구체적으로 현금지원 정책 중 부모의 고용상태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가족수당은 축소하고,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가 전제되는 산전후휴가 지원은 확대
 - 현물지원 정책의 경우.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탈가족화16)를 시도
-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가족정책을 추진한 국가로, 상승기 이후 GDP 대비 공공가족지출의 비율 2.9%대를 지속적으로 유지
 - 프랑스는 돌봄의 가족화와 사회화를 동시에 추구하며 가족수당과 ECEC 지워을 확대
 - ▶ 특히,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서비스의 이용률은 100%에 달하며, 0~2세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보육 서비스 지원을 고용·노동·건강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며 서비스를 확대해왔음
- 독일은 현금지원 정책이 강세였던 국가였으나 가족수당을 축소하고 ECEC 지원을 확대하면서 현물지원 정책 중심으로 전환
 - 독일은 돌봄의 사회화보다 가족화를 중심으로 지원하던 국가였으나, 가족정책의 목표를 기존의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서 2000년대 이후 "일·가족 양립지워"으로 전환하면서 정책 변화
 - ▶ 산전후휴가를 제외한 가족수당 및 기타 현금성 지원 모두 축소하고, ECEC 외에 보육시설 및 놀이시설 설치 등의 현물성 지원을 확대
- 일본은 가족 중심의 자여적 복지국가로서. 가정 영역에서의 돌봄의 사회화와 가족화에 대한 정책 추진이 서구에 비해 늦었지만, 한국과 비교해 저출산을 먼저 경험하면서 가족영역의 지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
 - 2000년에 0.5%에 불과했던 공공가족지출 비율이 2010년에 1.1%, 2017년에 1.6%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임
 - ➣ 현금지원 정책 중 아동수당의 비중을 확대하였으나 동일본지진 복구로 인하여 현금 지출을 줄이고 ECEC 중심의 현물지원 정책으로 전환

¹⁶⁾ 가족의 복지 및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구성원이 가족 내의 역할과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제도적 노력을 의미

주요국별로 출산율 하락기와 상승기를 구분하여 공공가족지출 및 정책 지표를 비교하였으나, 출산율과 공공가족 지출에 반영된 가족정책 간 직접적인 연관성은 발견하기 어려움

- 일반적으로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지출 및 제도 확대가 저출산을 제고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나, 출산율 회복을 경험한 주요국의 상승기 전후와 하락기의 지출 및 정책 지표를 비교한 결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발견하지는 못함
- 출산율 회복과 관련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서는 OECD에서 제공하는 공공가족지출 및 정책 지표 외에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관련 정책영역에서의 정부지원과 지표 변화를 향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 원고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한국 사례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향후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의 규모를 반영한 공공사회복지지출 통계자료(SOCX)를 구축하여 OECD 회원국과 비교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음

추계&세제 최근이슈

2021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가상자산 최근 동향 및 과세이슈 글로벌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논의 동향 주요국의 중기 재정전망 소개: 영국 OBR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스웨덴편-



2021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백 수 연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745)

2021년 7월 26일 정부는 선도형 경제 전환 및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에 목표를 둔 세법개정안 발표, 9월 3일 정기국회 제출 예정, 2021년 8월 12일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약 650건의 세법개정안 계류 중

이하에서는 2021년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함

1. 정부제출 세법개정안

2021년 정부제출 세법개정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 지원에 초점을 둔 가운데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도 포함

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신성장·원천기술보다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R&D 비용: 10%p↑, 시설투자 3~4%p↑)

표1 기술단계별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단위: %)

R&D비용(%)	대	중견	중소 시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11000010(70)	-11	9 L'	요~		시르구시(///	대	중견	중소	6기正
일반	2	8	25		일반	1	3	10	2
신성장·원천기술	20 ⁻	~30	30~40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3
국가전략기술	30 [,]	~40	40~50		국가전략기술	6	8	16	4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Reshoring) 시 세액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을 연장(1년 → 2년)하여 감면요건 완화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021년 말 → 2024년 말)
- * (소득·법인세) 완전복귀: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부분복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관세) 유턴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완전복귀 시 100%, 부분복귀 시 50% 감면
-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고용 증가 시 100만원 추가 세액공제(2021~2022년 한시 적용) 및 현 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2021년 말 → 2024년 말)

표 2 고용증대 세액공제 1인당 공제금액

구 분	중소	기업 (3년간)	중견	기업(3년간)	대기	l업(2년간)
TE	수도권	수도권 外	수도권	수도권 外	수도권	수도권 外
청년·장애인 등	1,100만원	1,200 → 1,300만원	800만원	800 → 900만원	400만원	400 → 500만원
일 반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450만원	-	-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

- OTT(Over-the-Top Service)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 ►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영상콘텐츠에 OTT 추가(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 *「전기통신사업법」등 근거법령상 OTT 정의규정 마련 후 「조특법」 반영 가능

나.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 ▶ 최저임금 상승 및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기준 200만원 인상
 - * 근로장려금 지급 추이(조원) : ('18) 1.3 ('19) 4.8 ('20) 4.5

표 3 가구별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가구 유형	현 행		개 정 안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Rightarrow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인 자, 경력단절여성에 대하여 소득세의 70%(청년 90%)를 3년간(청년 5년간) 감면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2021년 말 → 2023년 말)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6개월 연장

- ➣ 폐업 소상공인도 착한 임대인 세제지워 대상에 포함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시 50%) 세액공제
- * 폐업 전 세액공제요건(소상공인, 임대상가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 사업자등록 등 요건 충족)을 충족하면서 20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공제대상에 추가
-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 청년층(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이 장기펀드(3~5년)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다. 조세제도 합리화 등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상장주식 등 비과세
 - * ISA: (대상) 19세 이상 국민. (총 납입한도) 1억원(연 2천만원), (가입기간) 3년 이상
 - ▶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에 따라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비과세 규정 마련
 - (현행) ISA 내 이자·배당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 (개정안) 2023.1.1. 해지분부터 ① ISA 내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② 비과세분을 제외한 금융투자소득·이자·배당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 * 농어민 및 서민형은 400만원
-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 방지
 - ▶ 과세당국이 체납자 및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여 체납 국세에 충당
-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기한 3년 연장(2021년 말 → 2024년 말)

표 4 2021년 정부제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정책목표	주요 개정 내용
	•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 세액공제율 확대(R&D 10%p↑, 시설투자 3~4%p↑)
선도형 경제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 현행 대비 200만원 †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 2년 연장
시민 위식계층 시한 및 성성 중성기인 경약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폐업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정책목표	주요 개정 내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상장주식 등 비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	•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 방지			
	•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기한 3년 연장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1년 정부제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약 △1조 5.050억원

- (증가 요인) 특정외국법인 판정기준 현실화,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등
- (감소 요인)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

표 5 정부제출 세법개정안의 연도별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순액법)	△15,050	△12,579	△1,901	△200	△193	△177
- 소득세	∆3,318	△5,724	2,918	△142	△189	△181
- 법인세	△13,064	△6,572	△6,437	∆33	△15	△7
- 부가가치세	73	△1,025	1,000	· -	49	49
- 기타	1,259	742	618	△25	∆38	∆38
합계(누적법)	△71,662	△12,579	△14,480	△14,680	△14,873	△15,050
- 소득세	△17,933	△5,724	△2,806	△2,948	∆3,137	∆3,318
- 법인세	△58,744	△6,572	△13,009	△13,042	△13,057	△13,064
- 부가가치세	△978	△1,025	△25	△25	24	73
- 기타	5,993	742	1,360	1,335	1,297	1,259

주: 순액법은 각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대비 세수증감만 집계하는 방식이며, 누적법은 2021년(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추계한 값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2021년 8월 12일 현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2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30건 등 기획재정위원회(475건)와 행정안전위원회(173건)에 계류된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은 648건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액 조정·탄소세 도입·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내용 포함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액 조정 등 관련 법률안이 계류 중이었으나, 최근 조세소위에서 의결
 - ▶ 1세대 1주택자 공제액(현행 9억원)과 관련하여. ①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으로 설정하되 기준액 은 억 단위에서 반올림하려는 개정안(유동수의원안)과 ②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되 기존보다 상향(12억원 또는 15억원)하려는 개정안(권영세·이헌승의원안) 등이 계류 중(2021.8.12. 기준)
 - 2021.8.19.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1세대 1주택자에 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 에 추가 적용되는 공제분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1)(9억원 → 11억원)하는 것으로 의결2)
- (탄소세 도입) 탄소세 관련 법률안 계류 중
 - ➣ 온실가스 배출 과세물품에 대한 탄소세 도입을 규정한 「탄소세법안(용혜인의원안)」, 2022년 일몰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 이를 탄소세로 전환하려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장혜 영의원안) 등
-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현행보다 유예
 - ➤ 2022년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의 과세 시점을 1년 유예(윤창현·노웅래의원안), 2년 유예(유경준의원안)

투자 및 고용 지원·서민 중산층 지원 등의 내용은 정부안과 유사하나, 세액공제율 및 일몰 연장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 (투자 및 고용지원) 투자세액공제 확대. 고용 및 특허 관련 세제지원 확대
 - ➤ 반도체 등 전략기술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중소 최대 60%, 중견·대기업 최대 50% 및 시설 투자비(중소 20%. 중격 10%. 대기업 8%) 세액공제 신설(김경만의원안).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40%) 신설(정찬민의원안), 반도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50%) 신설(추경호·양정숙의원안)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mark>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mark> 을 공제한 금액] 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²⁾ 기존 소위계류 중이었던 26개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

- ▶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윸(현행 중소 10%, 중견 7%, 대기업 3%) 상향 (이상헌·추경호의원안: 중소 15%, 중견 10%, 대기업 5% / 배현진의원안: 중소 20%, 중견 15%, 대기업 10% / 윤후덕의원안: 중소 20%, 중견 15%, 대기업 7% / 서일준의원안: 중소 20%, 중견 14%, 대기업 6%), ② 영상콘텐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20%) 신설(김승수의원안) ③ 세액공제 대상 영상콘텐츠에 OTT 추가 (추경호의워안)
- ➤ 고용증대 세제지원 확대: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일몰 기한 3년 연장(김경만·이용의원안), 고용증대 중소 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김수흥·김경만의원안: 3년 / 김상훈의원안: 2년)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김용판의원안(2년)·권명호의원안(3년)·구자근의원안(4년)· 정일영의원안(7년)
- ▶ 특허 등 R&D 지원: 중소기업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박정·송갑석·김경만의원안), 중소기업의 기술 대여 시 세액감면율(25% → 50%) 상향(박범계의원안), 중소기업의 특허 등 사업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박광온·신정훈·양금희의원안). 국내복귀 기업의 특허 등 활용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신정훈·김진표의원안)
- (서민·중산층 지원)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농어민 등 지원 내용 포함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 3년 연장(김경만·이용의원안)
 -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 연장(민형배의원안: 재난사태 선포~해제된 날 / 이동주 의원안: 1년 / 김상훈의원안: 3년)
 - ➣ 농어민 관련 조세지원 일몰 연장: 2.3,4,5년 연장 및 일몰기한 폐지(항구화) 등 다수 의원안 발의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소득 기준 완화(장경태의원안)
 - ➣ 경형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연장 등 (전주혜의원안: 3년 / 이병훈의원안: 5년)
 -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3년 연장(김상훈의원안)
 - >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2년 연장(김상훈의원안) 및 일몰기한 폐지(김기현· 안규백·임오경의원안)
- (소비 진작)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등
 - ≫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일몰 연장(권성동의원안: 3년 / 고용진의원안: 4년)

표 6 2021년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인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2021년 8월 12일 기준

정책목표	주요 개정 내용					
부동산 세제	종합부동산세	• 1세대 1주택자 공제액(현행 9억원) 조정 -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반올림)으로 규정(유동수의원안) - 12억원으로 상향(권영세의원안)·15억원으로 상향(이헌승의원안)				
	양도소득세	• 고령자 과세이연 및 납부유예제도 신설(이용우·김수흥·유동수의원안)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유동수의원안)				
가상자산 과세	가상자산 과세 유예 - 2023년부터 과세(윤창현·노웅래의원안) - 2024년부터 과세(유경준의원안)					
탄소중립	• 온실가스 배출 물품에 탄소세 부과 - 탄소세 신규 도입 및 탄소세입을 배당으로 지급(용혜인의원안) -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장혜영의원안)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이장섭·고용진·박완주의원안)				
투자 및 고용 지원	• 투자세액공제 확대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사업화시설 투자비 세액공제 신설(김경만의원안) - 반도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추경호·양정숙의원안) - 영상콘텐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설(김승수의원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이상헌·배현진·윤후덕·추경호·서일준의원안)					
	• 고용지원 세제지원 확대 -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일몰 연장(김경만·이용의원안)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 연장(김수흥·김경만·김상훈의원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연장 등 - 일몰연장 등(구자근·정일영·김용판·권명호의원안) - 세액감면 기간 확대(구자근·조정식의원안) - 수도권외 복귀 기업에 대한 감면율 확대(윤두현의원안)					
	• 특허 등 R&D 지원 - 중소기업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박정·송갑석·김경만의원안) - 중소기업의 기술대여 시 세액감면율 상향(박범계의원안) - 중소기업의 특허 등 사업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박광온·신정훈·양금희의원안) - 국내 복귀 기업의 특허 등 활용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신정훈·김진표의원안)					
서민·중산층 지원	• 중소기업 취	업자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김경만·이용의원안)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 연장(민형배·이동주·김상훈의원안)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소득기준 완화(장경태의원안)					
	• 농어민 관련 조세지원 일몰연장 - 2,3,4,5년 연장 및 일몰기한 폐지(항구화) 등 다수 의원안 발의					
	• 경형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연장(전주혜·이병훈의원안)					
	• 부가가치세 면제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일몰기한 연장(김상훈의원안) -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등: 일몰기한 연장(김상훈의원안), 일몰기한 폐지(김기현·안규백·임오경의원안)					
소비진작	• 하이브리드차	h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일몰 연장(권성동·고용진의원안)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비과세 기준 마련(이채익·양항자·정청래의원안)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윤영석의원안)					

주: 소위계류 중이었던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 26건은 2021년 8월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대안반영폐기 자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2021.8.12. 기준)



- 국회예산정책처는 세법개정안의 내용 및 경제적·정책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계획
 - >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강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금액 인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상장주식 비과세 등에 대한 분석 예정
 - ▶ 그 밖에 5년간 세수효과, 세부담 귀착효과, 조세지출 정비계획 등 분석 예정

가상자산 최근 동향 및 과세 이슈

박 연 서 세제분석1과장 (02-6788-4744)

1. 가상자산 최근 동향

가상자산 전 세계 시장규모는 지난 5월 2,930조원까지 급등한 후, 6월 절반 이하인 1,377조원으로 급격히 감소한 뒤 다시 최근 2천조원을 넘어서면서, 자산가격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투자위험 우려 확대

- 한국의 가상자산¹) 시장규모는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로 추정되며, 젊은층을 중심으로 과도한 가상자산 투자 쏠림 현상에 대한 위기의식 증가
 - ▶ 한국 투자 거래 규모는 22.7조원, 투자자는 587만명(2021.5.3. 기준, 중복자 포함)²⁾ 규모 추정
 - * 전 세계 시장규모는 2013년 1.9조원, 24시간 거래량은 1천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시장규모 2천조원, 거래량 300조원까지 증가



자료: coinmarketcap.com, 2021.8.17. 검색 기준

¹⁾ 본 보고서에서는 2020년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가상자산'으로 용어 통일

²⁾ 금융위원회 자료,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기준



정부는 2020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을 개정(2021년 3월 시행)하여 기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요건 구비 등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정비

-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시행일(2021년 3월 24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규정
 - ▶ 가상자산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개설, 고객예치금의 분리 관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 2021년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60여 개사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9월 24일까지 신고기준 갖추지 못하면 영업 불가
 - *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8.17)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25개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신고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는 없었으며, 특금법 이행 준비상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발표

급성장한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가상자산업 전반에 관한 규제를 반영한 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되어 있으며 현재 상임위 계류 중

- 제정안은 가상자산업·가상자산 거래업자 정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산업발전 정책, 관련 업종 책임 부과 등 가상자산업 전반에 관한 규제 사항을 모두 포괄하는 내용
 - ➤ 현행 법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방지 목적 관련 사항만 다루고 있음

표 1 가상자산업 전반에 관한 의안 발의 현황

의안번호	대표발의	제안일자	의안명	주요 내용		
2109935	이용우의원	2021. 5. 7	가상자산업법안			
2110190	김병욱의원	2021. 5. 18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산업 발전 정책,		
2110312	양경숙의원	2021. 5. 21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업, 가상자산 거래업자 정의, 등록 및 신고,		
2111459	권은희의원	2021. 7. 9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책임 부과 등 규정		
2111771	민형배의원	2021.7. 27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해 규정		
2110447	강민국의원	2021. 5. 28	저지그오지래버 이너게저버르아	가상자산사업 전반에 대한 규정을		
211186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인 1860 배진교의원 2021. 8. 2		선사금융기대합 철무개성합률인	전자금융거래법에 포함		

자료: 의안정보시스템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 외 발의된 개별법률의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또는 강화 등 가상자산 관리에 관한 상반된 시각 공존

-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등 규제 강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중 일부 삭제 등 규제 완화 규정 혼재
- 그 외 개정안은 펀드(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완화, 가상자산 등 변동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규제 강화 등 규정 혼재

표 2 가상자산 관련 기타 규정 개정 의안 발의 현황

의안번호	대표발의	제안일자	의안명	주요 내용	
2107702	이주환의원	2021. 1. 27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2109422	이정문의원	2021. 4. 13	신고 수리하지 않도록 ㅠ		
2111912	조명희의원	9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자산사업자의 신고수리 거부 사유인 실명확 입출금 계정 확보 요건 삭제			
2111949	윤창현의원	2021. 8. 6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지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연장	
2111460	권은희의원	2021. 7.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	
2111485	송재호의원	2021. 7.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보유하는 가상자산 현황, 소유 목적 등 공시	

[참고] 가상자산 시장 현황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으며, 3개 가상자산 합산규모는 전체 시가총액에서 69% 비중 차지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가상자산 종류는 11,211개 수준 추정(코인마켓캡)

시가총액 기준 가상자산 현황

수위		한국(업비트 거래소 기준)				
판귀	명칭	시가총액	가격	거래량(24h)	가격	거래량(24h)
1	Bitcoin	1,000.5조원	5,339만원	38.5조원	5,290만원	0.5조원
2	Ethereum	434.5조원	371만원	32.7조원	367만원	0.4조원
3	Binance Coin	75.8조원	45만원	2.9조원	-	-
4	Tether	72.4조원	1,157원	90.1조원	-	-
5	Cardano	66.7조원	2,048원	5.2조원	2,045원	0.2조원
6	XRP 리플	48.3조원	1,031원	5.5조원	1,030원	0.6조원
7	Dogecoin	41.2조원	309원	4.6조원	308원	0.8조원

주: Tether, Binance Coin은 한국 업비트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음

자료: coinmarketcap.com, 2021.8.11. 검색 기준, 한국은 업비트 거래소, 2021.8.11. 15:50 검색 기준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큰 규모인 업비트 가준, 24시간 거래 규모는 12,5조원, 방문자 수는 214만명으로 추정('21.8.11.)

거래금액 기준 해외 및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순위

		전	네계		한국			
순위	명칭	거래금액	상장 코인수	방문자수	명칭	거래금액	상장 코인수	방문자수
1	바이낸스 Binance	31.6조원	380개	2,587만명	업비트 Upbit	12.5조원	147개	214만명
2	코인베이스 Coinbase Exchange	4.5조원	85개	302만명	빗썸 Bithumb	1.4조원	182개	65만명
3	후오비 Huobi Global	6.4조원	330개	89만명	코인원 Coinone	0.4조원	181개	90만명
4	FTX	2.9조원	242개	163만명	코빗 Korbit	0.4조원	47개	4만명
5	크라켄 Kraken	1.5조원	75개	119만명	코인빗 Coinbit	0.1조원	21개	6만명

자료: coinmarketcap.com, 2021.8.11. 16:00 검색 기준

2. 가상자산 과세 제도

과세제도 정비 이전인 2019년, 국세청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출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미납분(803억원)을 과세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중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코리아의 외국인 회원의 가상자산 원화출금액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빗썸 코리아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과세
 - ▶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 비거주자의 기타소득 중 '부동산 이외의 자산'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으로 해석
- 빗썸은 2020년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원칙적으로 90일, 통상 160일 이내에 결론이 나지만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심판 결정 보류 중

2020년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3)으로 구분하고 있고. 세법상 상표권 등 무형자산은 양도소득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점 등을 반영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
- 산출세액은 기타소득금액(양도금액-필요경비)에서 250만원 기본공제 후 20%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며, 과세기간 동안 손익 통산 허용
 - ➣ 필요경비에 채굴비용 포함 여부 등은 과세관청의 해석 필요

표3 가상자산 과세제도 개요

구 분	내 역
기타소득 금액	• 기타소득금액 = 가상자산 양도금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 2022년 1월 1일 이전 취득가액 = MAX (2021.12.31. 시가, 실제 취득가액) 그 이후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 적용
산출세액	• 국내거주자: (기타소득금액 - 250만원 기본공제) × 20% • 비거주자: 양도대가의 10%,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
손익 통산	• 과세기간 동안 손익 통산 허용
신고·납부	• 국내거주자: 원천징수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차년도 5월에 신고·납부 • 비거주자: 가상자산사업자가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 납부

³⁾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에서도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판단한 바 있음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포괄적 소득개념을 적용하므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는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과세 방법은 시행령에 반영(2021.3)

• 가상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 개정('21.3)

부가가치세의 경우 기획재정부 질의회신(부가가치세제과-145, 2021.03.02.)에서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 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회답

2015년 유럽 사법법원에서도 EU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국제적 동조 추세 반영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호주 등 대부분 국가는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보아 채굴 및 양도 단계에서 과세, 소비세는 비과세

- (미국) 2014년 가상화폐 과세지침을 마련하여, 가상화폐를 자산(property)으로 정의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자본이득으로 규정
 - * 2021년 바이든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하원 심사 이후 최종안 발표 예정
- (일본)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암호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지급결제 수단이라 하여 화폐와 자산의 관점 모두 규정
- (호주) 자산으로 과세, 투자목적 보유 가상자산의 거래 이익은 자본이득 규정

주요국 가상자산 과세체계 비교

구	분	미국	호주	일본	한국
가상자신	난 명칭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자산	가상자산
가상자신	산 성격	자산	자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지급결제수단	자산
채굴 활동	구분	개인소득세 자영업세	개인소득세	잡소득 또는 사업소득	-
	과세여부	과세	과세	과세	-
	구분	자본이익	자본이득 (개인) 잡소득 (법인)양도차익		개인: 기타소득 법인: 법인세
거래등	과세여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양도차익	적용세율	7단계 누진세율 10~37% 장기(0/15/20%)	5단계 누진세율 0~45%	7단계 누진세율 5~45%	개인: 분리과세 20% 법인: 누진세율 10~25%
가상자산	구분	-	소비세	소비세	-
판매·구매	과세여부	_	비과세	비과세	-

주: 한국은 2021년 세법개정 반영(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2020)를 바탕으로 재작성

3. 가상자산 과세 이슈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을 정비한 이후(2023년 또는 2024년)로 가상자산소득의 과세 시행시기를 (현행 2022.1.1.) 연기하는 규정.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하여 과세하는 규정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

표 4 가상자산 관련법 의안 발의 현황

의안명 의안번호		<u>반</u> 번호 대표발의 제안일자		주요 내용
	2110077	윤창현의원	2021. 5. 12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2023.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127	유경준의원	2021. 5. 14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2024.1.1
	2111370	노웅래의원	2021. 7. 6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

자료: 의안정보시스템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상자산 과세시기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이지만 최근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 정비를 시작한 점, 가상자산업 전반에 관한 규제 및 관리 법안의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를 1년~2년 연장하는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

● 윤창현의원은 2023년 1월 1일, 유경준의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가상자산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의 경우 기본공제금이 높고 손실의 이월공제가 가능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

- 노웅래의원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① 기본공제 증액(250만원→5,000만원), ② 5년 이월공제 적용 (현행법 이월공제 없음), ③시행시기 연장(22.1.1→23.1.1)이 적용됨
 - ▶ 현행법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 5년까지 손실금의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표 5 가상자산 소득과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비교

구분	가상자산	금융투자소득
시행 시기	2022.1.1	2023.1.1
소득 유형	기타소득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기타소득금액 - 기본공제	(금융투자소득액-기본공제) - 금융투자 이월결손금
기본공제	250만원	국내상장주식 등: 5천만원 기타(해외주식, 비상장주식 등): 250만원
이월공제	없음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만 허용)	결손금 이월공제 5년 허용
세율	20%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분: 25%
과세방법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
납부방법	차년도 5월 신고 납부	금융회사 원천징수 과세종료 또는 납세의무자 예정신고

글로벌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논의 동향

박 정 환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5)

2021년 7월 1월 OECD/G20 주도 포괄적 이행체계 협의체(Inclusive Framework, 이하 IF)는 제12차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괴세권 배분기준의 도입(Pillar 1)과 법인세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 2)의 핵심내 용에 대해 합의1)

이하에서는 글로벌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논의 배경 및 경과, 합의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함

1. 글로벌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논의 배경

세계 경제의 국제화와 경제활동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및 수익창출과 과세권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

-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다국적 IT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세 기록
 - ➤ 2021년 7월 기준 GAFA 기업의 시가총액은 2015년 대비 최소 3.4~5.3배 증가
-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특성에 기인한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 피 및 수익창출과 과세권의 불일치 문제 발생
 - ▶ 다국적 [T기업은 세율이 낮은 조세피난처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가 가능
 - ➣ 기업의 고정사업장을 중심으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현행 글로벌 법인세 과세체계에서는 다국적 IT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시장소재지국에서는 자국에서 발생한 기업의 수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는 문제 유발

¹⁾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의 문제(BEPS)의 논의사항 이행을 위한 다자간 합의체로 현재 139개국 참여 중이며, 금번 합의안에는 131개국이 동의. 이하 금번 합의안은 OECD/G20 합의안으로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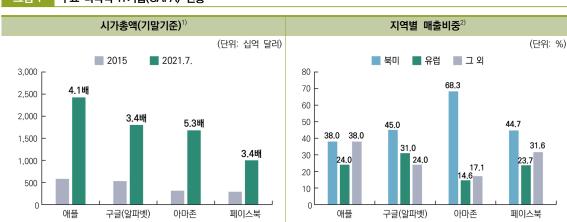


그림 1 주요 다국적 IT기업(GAFA) 현황

주: 1) 표시된 배수는 각 기업의 2015년말 시가총액 대비 2021년 7월말 시가총액의 규모

2) 구글(알파벳) 및 아마존의 북미 매출은 미국만을 포함하며, 구글(알파벳)의 유럽실적은 각각 중동 및 아프리카를 포함

자료: Statista

2. 글로벌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논의 경과

OECD는 2012년부터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의 문제(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에 관한 프로젝트를 통해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대응방안 논의 시작

- OECD는 2012년 BEPS 프로젝트 추진을 결정한 후 2013년 OECD/G20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논의
- 2015년 동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16년 포괄적 이행체계(IF) 구축
 - ➤ 2015년 10월 BEPS 프로젝트와 관련한 15개 실행계획 보고서를 발표
 - * 디지털 경제(Action 1), 고정사업장 회피방지(Action 2), 정상가격산출과 가치창출의 연계(Action 8-10), 이전가격세제의 적용 (Action 13) 등
 - ➤ 2016년 2월 BEPS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다자간 합의체인 IF 구축
 - * 2021년 7월 기준 139개국 참여 중
- 2019년 다국적 IT기업의 조세문제 해결을 위해 2가지 접근 방식(Two Pillar Approach)을 제안하였으며, 디지털 서비스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대상 사업에서의 다국적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
 - ➤ 2019년 5월 디지털 경제로 인한 조세문제 해결을 위해 ①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Pillar 1)과 ② 세원잠식 방지규정인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 2)이라는 2가지 접근 방식을 제시
 - ➣ 동년 10월 IT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대상 사업까지 과세범위에 포함하는 등 과세방식에 대한 청사진 발표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적극적으로 참여로 글로벌 법인세 과세체계 합의안 도출에 진전

-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과 미국의 BEPS 관련 논의 중단 등으로 합의안 도출 연기
 - ▶ 코로나19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국제회의가 연기되는 등 논의의 지연 발생
 - ▶ 미국은 GAFA 등 주요 다국적 IT기업의 다수가 미국기업이라는 점에서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논의에 소극적으로 대응
-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증세정책과 자국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추진을 위해 글로벌 법인세 개편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 ➤ 2021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은 향후 BEPS 관련 논의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선언
 - ▶ 2021년 4월 미국내 다국적기업의 해외 수익에 적용되는 해외 무형자산소득에 대한 과세(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이하 GILTI)의 세부담을 강화하고. Pillar 2와 공존하도록 GILTI 적용시 세율을 국가별로 계산

미국의 해외무형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GILTI)2)

- (목적) 자국민이 조세피난처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해외자회사를 차려놓고 무형자산을 이전하는 방식의 조세회피를 방지
 - * 2017년 도입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2021년 4월 강화안 발표
- (과세방식) 미국시민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회사의 소득 중 통상소득의 초과분에 대해서 무형자산 관련 소득으로 간주하여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포함
 - * 과세소득 포함분 = (해외자회사의 소득 통상소득※) × 지분율 × (1 공제율[※])
 - ※ 통상소득은 감기상각대상 유형자산의 10%에서 특정 이자비용을 차감하여 산정 공제율은 2025년까지 50%, 2025년 이후 37.5%로, GILTI 유효세율은 2025년까지 10.5%, 2025년 이후 13.125% 수준³⁾
- (강화안) 바이든 행정부는 통상소득으로 인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GILTI의 유효세율을 현행 10.5%에서 21%로 상향하는 안을 발표4)
 - * 법인세율 상향(현행 21% → 28%), 공제율 조정(현행 50% → 25%) 등 추진 예정

²⁾ 미국「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제951조A(26 USC §951A)

³⁾ 미국의 법인세율은 단일비례세율 21%로, 공제율 50% 적용시 10.5%, 공제율 37.5% 적용시 13.125% 수준

⁴⁾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he Made in America Tax Plan, 2021.4.

3. OECD/G20 글로벌 법인세 과세체계 합의안의 주요 내용

2021년 7월 OECD/G20 IF 제12차 총회에서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새로운 과세권 배분 기준 도입과 함께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도입에 대한 핵심내용을 통합적으로 합의

• 2021년 8월 현재 IF 참여국 139개국 중 131개국이 합의내용에 동의5)

가. 새로운 과세권 배분 기준 도입(Pillar 1)

Pillar 1은 일정 규모 및 이익률을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초과이윤의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

-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가라도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시장소재지국의 경우 과세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과세연계점 기준을 제안
 - ▶ 과세관할권 내에 사업장이 없어도 과세를 가능하게 만든 점에서 국제조세 원칙이 큰 틀에서 변경
-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 중 초과이익에 대해 새로운 과세연계점 기준을 적용하여 과세권을 배분

Pillar 1의 적용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디지털 서비스 사업과 소비자 대상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적용대상 기업의 매출액이 1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시장소재지국으로 판단

- Pillar 1 적용 대상: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6 및 이익률 1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중 디지털 서비스 사업과 소비자 대상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
 - ▶ 소비자 대상 사업의 다국적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다국적 [T기업과 마찬가지로 Pillar 1의 과세권 배분에 대상으로 포함
 - ➣ 소비자 대상 사업의 B2B업종(중간재 및 부품산업), 천연자원·금융·인프라 건설·국제항공 및 해운과 같은 산업군은 제외
- 시장소재지국: 적용대상 기업의 매출액이 과세관할권 내에서 100만 유로 이상 발생하는 국가에서 과세연계점 형성
 - ➤ 단. GDP가 400억 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적용대상 기업의 매출액이 25만 유로 이상 발생시 시장소재지국으로 파다

⁵⁾ 바베이도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일랜드, 케냐, 나이지리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스리랑카 등 8개국은 비동의 상태

^{6) 2021}년 7월 평균환율(1,352.72원/유로)을 적용시, 약 27.1조원

다국적 기업의 이익 중 시장소재지국에 배분가능한 이익을 세 가지 종류(Amount A·B·C)로 구분하고, 이 중 Amount A에 대해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배분

- Amount A는 초과이익 배분, Amount B는 기본기능 보상, Amount C는 추가기능 보상을 의미
 - ▶ Amount A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으로, Pillar 1은 Amount A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배분
 - ➤ Amount B는 고정사업장을 지닌 해외 자회사에서 기본적인 판매·홍보 활동에 대해 고정된 이익률로 과세 권을 배분
 - ➣ Amount C는 Amount B가 적용되는 기본기능을 넘어 시장소재지국에서 수행된 특별한 기능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보상
- 특히 Amount A에 대해서는 현재 고정사업장이 부재한 시장소재지국에서는 과세권이 없으나, OECD/G20 합의안이 시행될 경우 과세권을 배분할 예정
 - ▶ 합의안에 따라 재화 및 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이 귀속될 예정
 - * [그림 2]의 사례에서 고정사업장이 없는 시장소재지국인 영국 및 프랑스가 합의안에 따라 새롭게 과세권 배분
 - ▶ 단, B2B 등 특수한 거래에 대한 매출귀속 기준은 추후 정립하기로 함

그림 2 OECD/G20 합의안에 따른 초과이익 배분에 대한 예시

/C101: HHU10⊃/

						(단위: 백만유도)
	하그					
	한국 (모회사)		해외사업 합계	독일 (사업장 존재)	영국 (사업장 없음)	프랑스 (사업장 없음)
연결매출액(A)	90,000	연결매출액(A')	50,000	20,000	18,000	12,000
연결세전이익(B)	13,000	개별이익률(B')	-	2%	-	-
통상이익 (C=A×10%)	9,000	정상이익률(C')	_	5%	_	-
Amount A (D=B-C)	4,000	매출액 비중(D')	100%	40%	36%	24%
Amount A 배분 (E=D×20%) ¹⁾	800	Amount A 배분 (E×D')	800	320	288	192
Amount B ²⁾	600	Amount B 배분 (A'×[C'-B'])	600	600	_	_

주: 1) Amount A의 배분비율은 20%로 가정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2021.5.)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²⁾ Amount B는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자회사에 판매 및 유통활동의 대가로 고정이익률을 설정(본 사례에선 5%로 가정)하며, 이는 해외자회사 연결 매출액에서 (정상이익률-개별이익률)을 곱한 값으로 산출



OECD/G20 합의안은 고정사업장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국제조세체계에서 매출발생국에 과세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과세권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

- OECD/G20 합의안은 고정사업장의 존재를 바탕으로 과세권을 부여하던 기존의 국제조세체계에서 벗어나 매출발생과 과세권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조세체계가 변화하였음을 의미
 - * 일부 국가가 합의 이전에 임시적으로 다국적 IT기업의 매출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이하 DST)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따라 폐지가 검토될 것으로 예상
- 국내 과세당국은 해외 다국적 [T기업으로부터 추가적인 과세권이 확보되는 반면, 전자·자동차 등 소비자 대상 사업에 종사하는 국내 다국적 제조업 기업의 해외 시장소재지국과 과세권 조정이 동시에 발생할 예정

디지털 서비스세(DST)

- (도입 배경) OECD BEPS 프로젝트에서의 새로운 과세권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장기화 됨에 따라 2018년 EU집행위원 회에서는 회원국에 Pillar 1 도입 이전까지 임시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⁷⁾을 권고
- (과세방식) 고정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는 다국적 IT기업의 매출액에 일정 세율로 조세를 부과
- (현황) 2021년 7월 현재 프랑스 등 14개국에서 시행중 또는 도입 예정
 - * 유럽 국가 이외에도 인도 등 비유럽국가 일부에서도 시행중
- (미국과의 분쟁) DST 부과대상이 주로 미국의 다국적 IT기업임에 따라 미국과의 무역 갈등 발생
 - * 미국은 2021년 프랑스(2월), 오스트리아,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6월)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으며, 현재 조치를 유예중

⁷⁾ EC, Fair Taxation of the Digital Economy, 2018.3.

국가별 DST 도입 현황

771	11541171	부과대·	상 기준	шо	과세대상	
국가	시행시기	전 세계 매출액	자국 매출액	세율	파시네이	
프랑스	2019.1.소급적용	7.5억 유로	2,500만 유로	3%	디지털 인터페이스 제공, 광고 서비스	
헝가리	2019.7.~2022.12. (한시적)	1억 포린트	-	7.5%	광고	
이탈리아	2020.1.	7.5억 유로	550만 유로	3%	광고, 데이터서비스 판매	
말레이시아	2020.1.	50만 링깃	-	6%	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	
터키	2020.3.	7.5억 유로	2,000만 리라	7.5%	광고, 콘텐츠, 소셜미디어	
인도	2020.4.	2,000만 루피	-	6%	광고, 전자상거래 운영자	
영국	2020.4.소급적용	5억 파운드	2,500만 파운드	2%	SNS, 검색엔진, 온라인 중개서비스	
폴란드	2020.7.	7.5억 유로	-	1.5%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광고	
뉴질랜드	2020.10.	7.5억 유로	350만 뉴질랜드달러	3%	온라인 중개 서비스, 소셜미디어 콘텐츠, 검색 엔진	
스페인	2021.1.	7.5억 유로	300만 유로	3%	광고, 데이터 판매	
오스트리아	2021.1.	7.5억 유로	2,500만 유로	5%	광고	
브라질 ¹⁾	2021.5.	30억 헤알	1억 헤알	1~5%	광고, 데이터서비스 판매	
벨기에	도입예정	7.5억 유로	2,500만 유로	3%	데이터 판매	
체코	도입예정	7.5억 유로	1억 코루나	5%	광고, 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 데이터 판매	

주: 1. 이 밖에도 라트비아,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에서도 DST 도입 논의 중

자료: KPMG, 「Taxation of the Digitalized Economy」, 2021.7.

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 2)

Pillar 2는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방안으로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을 제안

- 세계적으로 최소 15% 수준의 법인세 최저한세를 도입
 - ▶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국가간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완화할 목적
-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을 계산하여 합의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방식

Pillar 2의 적용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다국적 기업집단이며, 과세방식을 위해 소득산입 규칙 등 4가지 제도로 구성

• Pillar 2 적용대상: 매출액 7.5억 유로8)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집단

¹⁾ 부과대상 및 세율은 광고 기준으로, 과세대상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

^{8) 2021}년 7월 평균환율(1,352.72원/유로)을 적용시, 약 1조원

- ▶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투자펀드, 연금펀드 등의 법인은 적용을 제외하며, 국제해운소득에 대해서 도 Pillar 2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 급여, 유형자산 순장부가치 등 실질 사업활동에 기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일부 공제
- 합의된 최저한세율보다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이 낮을 경우, 차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최저한 세율 이하를 적용받는 금액에 대해서 다음의 4가지 제도가 적용
 - ➤ 소득산입 규칙(Income Inclusion rule): 국외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이하로 과세될 경우, 모회 사가 거주지국에 그 지분율만큼 추가세액을 부담
 - ➤ 비용공제부인 규칙(Undertaxed Payments rule): 구성회사간 지급금이 저율과세될 경우 이를 지급한 구성 회사의 거주지국에서 비용공제를 부인하고 추가세액을 부담
 - ▶ 세액공제전환 규칙(Switch-over rule): 조세조약상 국외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모회사의 거주지국 에서 면세되고, 원천지국에서도 저율과세될 경우 거주지국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가세액을 부담
 - ➤ 조세조약 혜택배제 규칙(Subject to Tax rule): 명목세율이 최저한세율 이하인 국가에 소재한 국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금(이자. 사용료 등)에 대해 조세조약 등 혜택을 부인하고 워천지국에 추가세액 과세권을 인정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수준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법인세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글로벌 최저한세율이 도입되더라도 국내 법인의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 현행 국내법인의 세액산정시 국외소득을 포함하는 체계하에서 일반법인은 15% 이상의 실효세율을 기록 중 * 2019년 귀속소득 기준 일반법인의 신고분 실효세율⁹⁾은 21.9% 수준

3. OECD/G20 합의안의 함의와 향후 과제

OECD/G20 합의안은 디지털 경제하에서 기업의 수익발생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국제조세원칙의 변화와 함께 적극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시도로서의 의미가 있음

- 다국적 기업에 대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국제조세워칙의 변화
 - ▶ 현행 법인세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경제하에서 기업의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하였으나. 합의안 이행시 기업의 수익발생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큰 틀에서 변경

⁹⁾ 일반법인은 중소기업 법인을 제외한 법인을 의미하며,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총부담세액의 비중으로 계산

- 다국적 기업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국제적인 조세회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 ▶ 각국이 조세주권 하에서 정해진 법인세율에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반영함에 따라 세율이 낮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적극적인 시도

향후 OECD/G20 합의안의 세부적인 규정 등 쟁점사항을 보완하고, 국제적으로 동 합의안에 동참하지 않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동참한 국가들은 합의내용에 법제화 필요

• 현재 2021년 10월까지 새롭게 적용되는 조세규칙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율, 규칙 적용에 예외조항, 과세표준 산정 시 고려할 실질적 사업활동에 따른 소득공제 등 논의할 주요 쟁점 존재¹⁰⁾

표1 향후 BEPS 논의에서 다루어질 주요 쟁점

구분	분류	쟁점				
	적용대상기업	국외 적용 업종 매출액 기준의 적용 여부				
	과세연계점	최소매출 지속기간 적용 여부				
	배분량	초과이익 중 Amount A 배분량 구체화				
	매출귀속 기준	Pillar 1 포함 업종에 대한 구체적 매출귀속 기준				
	사업구분	사업구분 적용 기준 구체화				
Pillar 1	마케팅과 유통이익 관련 세이프 하버	세이프 하버 규칙 구체화				
	이중과세 제거	Amount A 부담 법인의 구체적 식별 기준 도입				
	조세확실성	다자 협약의 개별과 분쟁 예방·해결 매커니즘 마련				
	Amount B	Amount B 적용 범위와 고정률 도출				
	일방적 조치	의무 불이행시 대응방안				
	비용공제부인규칙	저세율국 최종모회사에 대한 규칙 적용시 추가 세액(top-up tax) 상한(cap) 적용 여부				
	실효세율 계산	재무 보고시점과 세무 보고시점의 차이에 따른 손실이월공제 및 이연법인세 조정방안 등 논의				
	최저한세율	최종 최저한세율에 대한 합의				
Pillar 2	적용 예외	실질적 사업활동에 대한 공제 수준 합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최소기준의 구체화, 초기 발전단계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논의 등				
	단순화	단순화를 위한 세이프 하버와 기타 매커니즘 논의				
	원천지국과세	최종 최저한세율에 대한 합의, 이자와 로열티 이외의 기타 지급금 범위 확정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 2021.7.

- 현재 합의안에 비동의한 국가 중 아일랜드 등 법인세 저세율국가가 존재하는 만큼,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의 실질적인 효력을 위해서는 동 합의안에 동참하지 않은 국가들의 참여가 필요
- 이와 함께 개별 국가들은 최종합의안 도출 이후 국내세법과 양자간 조세조약 중 Pillar 1,2와 관련된 조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수정 또는 개정할 필요

¹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 2021.7.

주요국의 중기 재정전망 소개: 영국 OBR

정 재 호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3)

중기적 시계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을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중기 재정여건을 전망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

● 재정전망 동향 시리즈에서는 우리나라 중기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국의 중기 재정전망 사례를 소개

영국 예산책임처(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OBR)는 2021년 3월에 5년(2021~2026)의 기간에 대한 경제·재정전망 보고서「Economic and Fiscal Outlook」을 발표1)

 OBR의 경제·재정전망은 코로나19 백신 보급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고용유지 지원제 도(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이하 "CJRS")2) 및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Self 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 이하 "SEISS")3) 연장, 영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새로운 무역협정(UK-EU Trade Cooperation Agreement) 등을 고려하여 전망 결과를 도출하였음4)

¹⁾ OBR은 정부의 예산안 및 재정운용계획 공개 시점인 매년 3월에 「Economic and Fiscal Outlook」을 발표하였으나, 2020년에는 11월에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한 「Economic and Fiscal Outlook」을 추가로 발표함. 2021년 3월에 공개한 「Economic and Fiscal Outlook」은 2020년 11월 이후 영국 내 코로나19 백신보급 등의 영향을 고려한 수정된 경제·재정전망으로 볼 수 있으며, OBR은 2021년 11월에도 「Economic and Fiscal Outlook」를 발표할 예정임

²⁾ CJRS는 사업주가 2020년 2월 28일 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급여명세서에 등재된 직원을 계속해서 고용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직원 월급여의 최대 80%(상한금액은 2,500파운드)를 지원하는 제도로, CJRS는 2021년 3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출현 등을 고려해 2020년 12월 18일에 CJRS 종료기간을 2021년 9월까지로 연장하였음

³⁾ SEISS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연평균 소득 5만 파운드 이하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소득의 최대 80%(최대 7,500파운드)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차례 지급한 바 있으며, 2021년 9월에 종료 예정임

⁴⁾ OBR의 경제·재정전망은 역년(Calendar Year) 및 회계연도(Fiscal Year) 기준 전망을 모두 공개하는데, 여기서는 회계연도 기준 전망값을 정리

1. 경제전망(FY2021⁵)~FY2025)

- FY2020년 GDP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9% 감소한 1조 9.110억 파운드였으나. 이후 FY2021년 부터 FY2025년까지는 GDP가 매년 3.8%씩 성장해 FY2025년 GDP를 2조 3.062억 파운드로 전망
- 영국 정부는 2019년에 저임금위원회(Low Income Commission)의 권고에 따라 국가생활임금6을 FY2019 년부터 FY2021년까지 매년 4.2%씩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OBR은 이후 전망기간 동안에도 국가생활임금 이 매년 4.2%씩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FY2025년 국가생활임금을 10.5파운드로 전망
- FY2020년 실업률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18.4% 증가한 4.8%였으며, FY2021년에는 5.9%로 전망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후 감소하기 시작해서 FY2025년 실업률을 4.4%로 전망
- 소비자물가지수는 FY2020년 109.0에서 FY2025년 119.6으로 연평균 1.7%씩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 주택가격지수는 코로나19 및 영국의 EU 탈퇴 등에 따른 영국 내 외국인 노동자들 수의 일시적 감소로 FY2021년 130.3에서 FY2022년 128.1로 1.7% 하락 후 다시 증가해 FY2025년에는 140.0으로 전망

경제전망 결과 丑1

구분	FY2019 ²⁾	FY2020	FY2021	FY2022	FY2023	FY2024	FY2025	FY2020-FY2025 연평균증가율
실질GDP(10억 파운드) ¹⁾	2,160.3	1,911.0	2,093.0	2,197.0	2,230.1	2,266.7	2,306.2	3.8
국가생활임금(파운드/시간)	8.2	8.7	8.9	9.3	9.7	10.0	10.5	4.2
실업률(%)	3.9	4.8	5.9	5.7	4.9	4.4	4.4	∆1.7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108.3	109.0	110.8	112.9	115.0	117.3	119.6	1.9
주택가격지수(2015=100)	120.0	124.0	130.3	128.1	129.1	134.2	140.0	2.5

주 1): 기준연도: 2015년 2): FY2019년은 확정값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21.03)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정리

⁵⁾ FY2021(2021년 회계연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

⁶⁾ 국가생활임금은 25세 이상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중위근로소득의 55%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2016년 4월부터 시행. 2021년부터 국가생활임금 적용 기준 나이를 23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19세 이상 근로자 전체로 확대 시행할 예정임

[참고1] 경제전망 주요 가정

가정1. 코로나19 백신 보급

• 2021년 7월 31일까지 접종대상 인구에 대한 백신 접종 완료(주 평균 4백만 명 접종) - 2021년 7월 31일 기준 백신 1차 접종률 88.5%, 2차 접종률 72.1% (https://coronavirus.data.gov.uk)

가정2.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계획

- 1단계: 3월 8일부터 초·중·고등학교 전면 등교 허용, 3월 29일부터 야외 수업 허용
- 2단계: 4월 12일부터 6인 이내 또는 서로 다른 두 개 가구 구성원의 야외 활동 및 실내 상점 방문 허용
- 3단계: 5월 17일부터 1,000명 이하의 실내 모임 및 10,000명 이하의 야외 활동 허용
- 4단계: 6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모든 종류의 사회·경제적 활동 허용

가정3. EU-영국 간 무역협정(EU-UK Trade Cooperation Agreement)

• 상품교역, 어업권 등 EU와 영국 간 무역협정의 주요 협의사항은 아래와 같음

표2 EU-영국 간 무역협정 주요 협의사항

구분	주요 협의사항
상품 무역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 적용
서비스 무역	영국 금융기관의 EU 시장에 대한 접근 제한 및 데이터 관련 규제 적합성 평가 의무 추가
어업권	EU 공동 어획구역 내 어획량 25% 감축, 전환기는 5.5년
공정 경쟁	무역,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 및 환경 규제 등의 도입 제한 등
분쟁 해결	EU와 영국 간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독자적 중재패널 운영 등

자료: 「The 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정리

[참고2] 2020년 경제전망과의 비교

- 2020년 11월 경제전망에서는 FY2022년 실질GDP를 2조 1,795억 파운드로 전망하여 2021년 3월의 FY2022년 실질GDP 전망값인 2조 1,970억 파운드에 비해 약 200억 파운드 낮았으나, FY2025년 GDP는 2조 3,002억 파운드로 전망하여 2021년 3월 전망결과와 비슷한 수준임
- 2020년 11월 경제전망에서는 FY2021년 실업률을 7.3%로 전망하였으나. 2021년 3월의 FY2021년 실업률 전망값은 CJRS. SEISS 등의 연장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1.4% 포인트 낮은 5.9%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2020년 11월 경제전망과 2021년 3월의 경제전망 결과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주택가격 지수의 경우 FY2021년과 FY2022년의 주택가격지수 전망값이 서로 큰 차이를 보임

표 3 2020년 11월 경제전망 결과

구분	FY2019	FY2020	FY2021	FY2022	FY2023	FY2024	FY2025	FY2020-FY2025 연평균증가율
실질GDP(10억 파운드) ¹⁾		1,880.3	2,076.1	2,179.5	2,222.0	2,259.8	2,300.2	4.1
국가생활임금(파운드/시간)	8.2	8.7	8.9	9.3	9.7	10.0	10.5	3.8
실업률(%)	3.9	4.7	7.3	6.2	5.1	4.5	4.4	△1.3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107.8	108.7	110.0	111.7	113.6	115.8	118.1	1.7
주택가격지수(2015=100)	120.0	123.2	118.9	115.8	122.5	131.1	138.6	2.4

주 1): 기준연도: 2015년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20.11)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정리

그림 1 실질GDP 전망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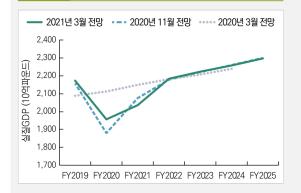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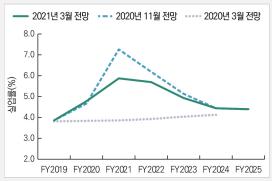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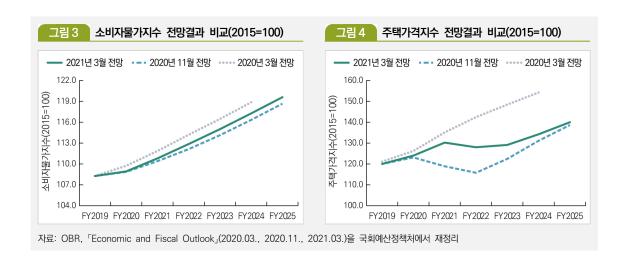


그림 2 실업률 전망결과 비교





2. 재정전망(FY2021~FY2025)

가. 공공부문 수입(Public Sector Receipts)

- FY2020년의 공공부문 수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FY2019 대비 5.1% 감소한 7,863억 파운드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FY2025년에는 1조 378억 파운드가 될 것으로 전망
- FY2020년과 FY2021년의 소득세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CJRS, SEISS 등의 영향으로 FY2019년에 비해 높을 것으로 전망
- FY2020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정부의 납입 기한 연장 및 부가세율 인하 등의 조치에 따라 FY2019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납입 기한이 도래하는 FY2021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영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FY2023년부터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2021년 3월 3일), 이에 따라 FY2023년의 법인세 전망값은 FY2022년 의 법인세 전망값 594억 파운드 대비 35% 증가한 759억 파운드로 전망기
 - ▶ 한편, 식당, 커피숍, 주류판매점 등의 서비스업에 대한 부가세율 감면 조치(20% → 5%)는 2020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1년 9월까지로 연장하고 이후 2022년 3월까지는 부가세율을 12.5%로 적용
- 기타 세금에는 자산거래세(Property Transaction Taxes), 상속세, 유류세, 항공여객세, 주류세, 담배세 등이 포함되는데8), FY2021년에 2,868억 파운드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⁷⁾ 영국 정부는 FY2023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법인세율 적용에 따른 생산 위축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4월부터 2년간 제조업 분야의 신규 투자비용의 130%를 공제해 주는 '수퍼 공제'(Super Deduction)을 도입하였음

⁸⁾ 기타세금에는 자산거래세, 자본이득세, 상속세, 유류세, 항공여객세, 주류세, 담배세 외에도 지방세(Council Tax), 디지털서비스세, 자동차세, 기후변화 부담금, 탄산음료산업 부담금, 환경부담금 등이 포함

- ➣ 자산거래세·상속세와 유류세·항공여객세는 각각 주택가격 등의 일시적 하락,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소한 후 FY2022년부터 증가하고. 주류세·담배세 등은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 영국 정부는 조세 회피 등을 차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세수 증가 효과는 FY2023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

표 4 공공부문 수입 전망

(단위: 10억 파운드, %)

								11. 10 1 1 1 1 1 1 1 1 1 1
	FY2019	FY2020	FY2021	FY2022	FY2023	FY2024	FY2025	FY2020-FY2025 연평균증가율
공공부문 수입	828.2	786.3	819.3	885.4	944.7	994.2	1,037.8	5.7
소득세	193.2	193.8	198.5	207.4	219.0	231.0	246.7	4.9
법인세	61.7	47.4	38.4	44.0	59.4	75.9	82.9	11.8
부가가치세	129.9	98.2	147.2	144.5	149.2	154.9	159.0	10.1
사회보장부담금	142.9	143.8	148.4	152.4	157.5	163.4	170.1	3.4
기타	300.5	303.2	286.8	337.0	359.7	369.1	379.2	4.6
공공부문 수입(GDP 대비)	37.2	37.5	36.2	37.3	38.4	39.0	39.1	_
소득세	8.7	9.3	8.8	8.8	8.9	9.1	9.4	-
법인세	2.1	2.1	1.7	2.0	2.9	3.2	3.2	-
부가가치세	6.0	5.7	5.6	6.1	6.1	6.1	6.0	-
사회보장부담금	6.5	6.9	6.5	6.4	6.4	6.4	6.4	-
기타	13.9	13.5	13.6	14.0	14.1	14.2	14.1	-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21.03)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정리

나. 총관리지출(Total Management Expenditure)

- 공공부문에 대한 총지출을 의미하는 총관리지출은 FY2020년 1조 1,409억 파운드에서 FY2022년에는 9,923억 파운드로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여 FY2025년에는 1조 1,115억 파운드로 전망(연평균 증가율 △0.5%)
- FY2020년과 FY2021년의 부처별지출한도》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사회복지부. 비즈니스・ 에너지·산업전략부의 업무 증가에 따라 FY2019년 대비 각각 38.7%, 28.9% 증가한 4.450억, 4.136억 파운드로 전망하였으며, 이후 업무 종료에 따라 지출이 감소하여 FY2025년에는 4.097억 파운드로 전망
- 연간관리지출10)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지출은 전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FY2025년에는 2,823억 파운드로 전망(연평균 증가율 2.9%)할 것으로 전망

⁹⁾ 부처별지출한도(Resource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는 중앙정부의 서비스 공급 비용(인건비 등) 및 공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준비금(조기퇴직 보상 등 미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준비금) 등을 포함하며, 정부부처가 향후 3년간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의미

¹⁰⁾ 연간관리지출(Annual Management Expenditure)은 부처별지출한도와 달리 지출 상한선 설정이 어려운 일회성 지출 등을 의미



- FY2020년 시작된 코로나19대응 지출에는 CJRS, SEISS 외에도 회생대출제도(Recovery Loan Scheme)11) 가 포함되며, 이들 코로나19대응 지출은 FY2021에 모두 종료될 예정임
- 이자지출은 인플레이션 둔화, 저금리, 공격적인 자산매입제도(Asset Purchase Facility, APF) 운영 등으로 FY2022년에 245억 파운드를 기록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FY2025년에는 337억 파운드로 전망
- 영국과 EU는 영국의 EU 탈퇴 선언(2017년 3월 29일) 이후 EU재정기여금12) 납입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며13). 영국은 합의금을 수십 년의 기간 동안 분할 납입할 계획임

표 5 총관리지출 전망

(단위: 10억 파운드, %)

			FY2019	FY2020	FY2021	FY2022	FY2023	FY2024	FY2025	FY2020-FY2025 연평균증가율
총곤	난리지출		885.2	1,140.9	1,053.3	992.3	1,030.1	1,068.7	1,111.5	△0.5
	부:	처별지출한도	320.8	445.0	413.6	362.4	377.3	393.0	409.7	△1.6
		계	470.1	566.6	520.9	503.8	520.9	540.1	561.9	△0.2
경		복지지출	227.7	244.8	249.1	254.9	263.3	271.9	282.3	2.9
경상지출	연간	코로나19대응	2.2	79.7	24.3	-	-	_	-	_
출	관리 지출	이자지출	36.6	23.9	24.8	24.5	27.7	31.1	33.7	7.1
	'-	EU재정기여금	10.9	10.4	11.0	8.7	4.3	2.2	1.6	∆31.2
		기타 ¹⁾	192.7	207.8	211.7	215.8	225.7	234.8	244.3	3.3
	자	론지출 ²⁾	94.4	129.4	118.8	126.1	131.8	135.6	139.8	1.6
총곤	난리지출	(GDP 대비)	39.8	54.4	46.5	41.8	41.9	41.9	41.9	-
	부:	처별지출한도	14.4	21.2	18.3	15.3	15.3	15.4	15.4	-
		계	21.1	27.0	23.0	21.2	21.2	21.2	21.2	_
경		사회보장지출	10.2	11.7	11.0	10.7	10.7	10.7	10.6	_
경 상 지 축	연간	코로나19대응	0.1	3.8	1.1	0.0	0.0	0.0	0.0	_
출	관리 지출	이자지출	1.6	1.1	1.1	1.0	1.1	1.2	1.3	_
		EU재정기여금	0.5	0.5	0.5	0.4	0.2	0.1	0.1	-
		기타	8.7	9.9	9.3	9.1	9.2	9.2	9.2	-
	자	본지출	4.2	6.2	5.2	5.3	5.4	5.3	5.3	-

주 1): 기타세금에는 국가 복권기금, 지방정부 경상지출, BBC 운영지출, 공적연금 등이 포함

주 2): 자본지출에는 지방정부의 자본지출, 공기업의 자본지출,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보조금 등이 포함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21.03); NABO. 「2020 주요국의 재정제도」(2020.06)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정리

¹¹⁾ 영국 내 모든 사업체(기존 대출제도 수혜자 포함)를 대상으로, 25,000~100,000파운드 사이의 대출에 대하여 최대 80%까지 정부가 보증

¹²⁾ EU재정기여금(EU Financial Settlement)은 영국이 "2014~2020 EU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EU회원국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의무납입금

^{13) 2021}년 8월 17일 기준

다. 재정적자

● OBR은 FY2021년 재정적자가 2,340억 파운드(GDP대비 10.3%)로 전망기간 중 최고값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후 정부의 코로나19대응 지출 감소 등에 따라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FY2025년에는 737억 파운드로 전망

표 6 연방정부 재정수지 전망

(단위: 10억 파운드, %)

	FY2019	FY2020	FY2021	FY2022	FY2023	FY2024	FY2025	FY2020-FY2025 연평균증가율
공공부문 수입	828.2	786.3	819.3	885.4	944.7	994.2	1,037.8	5.7
총관리지출	885.2	1,140.9	1,053.3	992.3	1,030.1	1,068.7	1,111.5	△0.5
재정적자	△57.0	∆354.6	△234.0	△106.9	△85.4	△74.5	△73.7	△27.0
재정적자 (GDP대비)	△2.6	△16.9	△10.3	△4.5	△3.5	△2.9	△2.8	-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21.03)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정리

라. 정부채무

- OBR은 FY2021년 정부 채무가 2조 5,030억 파운드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정부 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FY2025년에는 2조 8,040억 파운드로 전망
 - ▶ 한편. FY2021년의 GDP 대비 정부 채무 비율은 107.4%로 전망하였으며. FY2023년에 GDP 대비 정부 채무 비율이 109.7%로 전망기간 중 최고값을 기록한 후 감소하여 FY2025년에는 103.8%가 될 것으로 전망(연평균 증가율 5.5%)
 - ► FY2025년의 GDP대비 정부채무 비율을 103.8%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전망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세수 증가를 위한 노력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음

표7 연방정부 재정적자 전망

(단위: 10억 파운드, %)

	FY2019	FY2020	FY2021	FY2022	FY2023	FY2024	FY2025	FY2020-FY2025 연평균증가율
정부채무	1,798	2,198	2,503	2,631	2,747	2,761	2,804	5.5
정부채무 비율 (GDP대비)	84.4	100.2	107.4	109.0	109.7	106.2	103.8	_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21.03)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정리



[참고3] 2020년 재정전망과의 비교

- 2020년 11월 재정전망에서는 공공부문 수입이 연평균 3.3%씩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여 FY2025년에는 1조 43억 파운드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2021년 3월 재정전망의 FY2025년 공공부문 수입 1조 378억 파운드에 비해 약 300억 파운드 낮은 수준임
- 2020년 11월 재정전망에서는 FY2021년 총관리지출을 1조 115억 파운드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2021년 3월 재정전망의 FY2021년 총관리지출 1조 533억 파운드에 비해 약 400억 파운드 낮은 수치임
- 재정적자의 경우, 2020년 11월 재정전망에서는 FY2020년의 재정적자를 3,936억 파운드로 전망하였으나, 2021년 3월 재정전망에서는 3,546억 파운드로 약 400억 파운드 낮은 수준으로 전망
- 한편, 정부채무의 경우 2020년 11월 재정전망에서는 GDP대비 정부채무 비율이 FY2020년 85.5%에서 FY2025 년에는 113.6%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2021년 3월 재정전망에서는 GDP대비 정부채무 비율이 FY2023년에 109.7%로 전망기간 중 최고값을 기록한 후 감소하여 FY2025년에는 103.8%가 될 것으로 전망
 - 2021년 3월 재정전망의 FY2021~FY2025년 GDP대비 정부채무 비율은 2020년 12월 영국 정부가 발표한 채무 관리 계획의 영향을 고려하여 2020년 11월 재정전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8 2020년 11월 재정전망 결과

(단위: 10억 파운드, %)

구분	FY2019	FY2020	FY2021	FY2022	FY2023	FY2024	FY2025	FY2020-FY2025 연평균증가율
공공부문 수입	828.2	771.0	847.3	885.9	927.0	964.4	1,004.3	5.4
총관리지출	885.2	1,164.6	1,011.5	990.5	1,027.4	1,064.0	1,106.1	△1.0
재정적자	△57.0	∆393.6	△164.2	△104.6	△100.4	△99.6	△101.8	△23.7
재정적자(GDP대비)	∆2.6	△19.0	△7.4	△4.4	△4.1	∆3.9	∆3.9	-
정부채무	1,798	2,274	2,478	2,602	2,721	2,714	2,817	4.4
정부채무 비율(GDP대비)	84.4	85.5	105.2	108.0	108.6	109.4	113.6	-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20.11)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정리

그림 5 재정수지(GDP대비) 전망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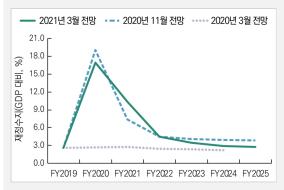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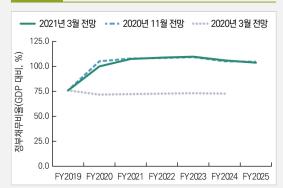


그림 6 정부채무 비율(GDP대비) 전망결과 비교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20.03., 2020.11., 2021.03.)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정리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 스웨덴편 -

이 미 연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61)

이번 호는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를 살펴보는 시리즈의 세 번째 순서로, 1913년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웨덴의 연금개혁 사례를 소개

1.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 개요

가. 연금제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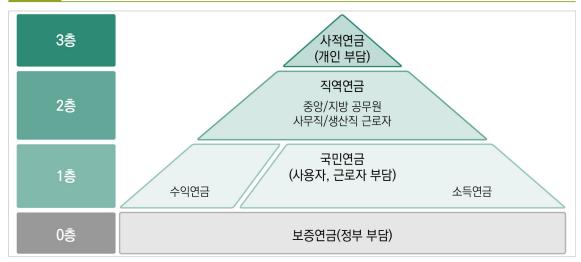
-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로서 공적연금, 직역연금, 사적연금으로 구성되며, 공적연금은 보증연금(guarantee pension), 소득연금(income pension), 수익연금(premium pension)이고, 직역연금은 사무직 및 생산직 근로자,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을 말함
 - ▶ 0층에 위치하는 보증연금은 연금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보충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으로 중앙정 부의 일반재정에서 전액 부담
 - ▶ 1층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득연금과 수익연금이 위치하고, 보험료는 소득의 18.5%(16% 소득연금, 2.5% 수익연금)
 - ▶ 2층에는 직역연금으로 4가지 직군(중앙/지방 공무원, 사무직/생산직 근로자)의 단체협약에 의해 설계된 제도이고, 보험료는 매년 발표하는 기준소득에 따른 등급별 보험료율을 적용
 - ▶ 3층은 개인연금으로 은행, 보험회사 등의 상품에 개인이 임의가입하여 노후소득을 확보

[참고] 직역연금 보험료율

민간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연금이지만, 근로자의 9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준강제적 연금제도 직역연금의 보험료율은 기준소득(2020년 기준 66,800 크로네) 7.5배 이하는 급여의 4.5%, 7.5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적용

지방정부 공무원의 경우, 보험요율이 3.4%~4.5%로 소속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음

그림 1 스웨덴 연금제도 구조



자료: 스웨덴 연금청 홈페이지(http://www.pensionsmyndigheten.se)

나. 공적연금제도 개요

국민연금(소득연금+수익연금) 가입자 수는 2020년 기준 6,168,986명이고, 보증연금을 포함한 수급자 수는 2,283,745명

- 보증연금, 소득연금, 수익연금 등 공적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은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는 16세 이상의 국민
 - ▶ 스웨덴의 인구는 2020년 12월 기준 10.379.295명¹)이고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20년 20.3%로 추정²)
 - ▶ 보험료 납부 없이 100% 정부가 지원하는 보증연금의 수급자 수는 2020년 12월 기준 700,004명
 - ▶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득연금과 수익연금의 가입자 수는 2020년 12월 기준 6,168,986명이고, 수급자 수는 1.583,741명

표 1 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수 현황: 2016~2020년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보증연금(수급자, a)		697,926	663,127	658,789	660,537	700,004
국민연금	가입자	5,793,951	5,888,894	5,989,629	6,081,269	6,168,986
(소득연금+수익연금)	수급자(b)	1,476,367	1,540,258	1,573,986	1,608,006	1,583,741
공적연금 수급자 수(=a+b)		2,174,293	2,203,385	2,232,775	2,268,543	2,283,745

자료: 스웨덴 연금청(2021), 「2020년 연례보고서(2020 Arsredovisning)」

¹⁾ 스웨덴 통계청(Statistics Sweden), https://www.scb.se

²⁾ 통계청(http://kosis.kr)에서 제공하는 OECD 국가별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를 참고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은 2016년 2,965억 5,500만 크로네(37조 5,587억원)에서 2020년 3,412억 2,600만 크로네(45조 5,400억원)로 연평균 3.6% 증가

丑2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 2016~2020년

(단위: 백만 크로네, 억원)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증가율
여기버침크 사이	296,555	308,288	322,801	334,526	341,226	2.60/
연금보험료 수입	(375,587)	(407,618)	(437,589)	(449,034)	(455,400)	3.6%

주: 괄호()의 숫자는 원화로 환산한 값으로 적용한 환율은 한국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환율(1 크로네는 2016년 126.65원, 2017년 132.22원, 2018년 135.56원, 2019년 134.23원, 2020년 133.46원)

보증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지출규모는 2020년 기준 3,545억 5,200만 크로네(47조 3,185억원)

- 보증연금 지출액은 2016년 140억 4,900만 크로네(1조 7,793억원)에서 2020년 142억 5,800만 크로네(1조 9.029억원)으로 소폭 증가
- 국민연금 지출액은 2016~2020년 동안 연평균 4.1% 증가하여 2020년 3,402억 9,400만 크로네, 원화로 47조 3,185억원에 이름

표3 공적연금 지출규모(2016~2020년)

(단위: 백만 크로네,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증가율
HZGJ	14,049	13,292	13,090	13,103	14,258	0.4%
보증연금	(17,793)	(17,575)	(17,745)	(17,588)	(19,029)	0.4%
국민연금	289,346	304,586	313,981	325,666	340,294	4.1%
(소득연금+수익연금)	(366,457)	(402,724)	(425,633)	(437,141)	(454,156)	4.1%
 합계	303,395	317,878	327,071	338,769	354,552	4.0%
입계	(384,250)	(420,298)	(443,377)	(454,730)	(473,185)	4.0%

주: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스웨덴 연금청의 각 연도「Orange report」

^{2.} 괄호()의 숫자는 원화로 환산한 값으로 적용한 환율은 한국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환율(1 크로네는 2016년 126.65원, 2017년 132.22원, 2018년 135.56원, 2019년 134.23원, 2020년 133.46원)

자료: 보증연금 지출액은 스웨덴 연금청(2021)의 통계데이터베이스(https://www.pensionsmyndigheten.se/statistik/pensionsstatistik/) 검색결과 를 정리한 것이고, 국민연금 지출규모는 스웨덴 연금청의 각 연도「Orange report」참고



보증연금의 1인당 월지급액(완전연금3), 독신 기준)은 2016년 7,863 크로네(995,849원), 2020년 8,597 크로네(1,147,356원)로 연평균 2.3% 증가

● 기혼자의 경우는 2020년 기준 1인당 월 7,690 크로네(1,026,307원) 지급

표 4 보증연금(완전연금 기준) 월지급액: 2016~2020년

(단위: 크로네,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증가율
EVI	7,863	7,952	8,076	8,254	8,597	2.20/
독신	(995,849)	(1,051,413)	(1,094,783)	(1,107,934)	(1,147,356)	2.3%
715	7,014	7,093	7,204	7,362	7,690	2.20/
기혼	(888,323)	(937,836)	(976,574)	(988,201)	(1,026,307)	2.3%

주: 1. 괄호()의 숫자는 원화로 환산한 값으로 적용한 환율은 한국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환율(1 크로네는 2016년 126.65원, 2017년 132.22원, 2018년 135.56원, 2019년 134.23원, 2020년 133.46원)

자료: 스웨덴 연금청의 각 연도「Orange report」

[참고] 보증연금월액 산식(2020년 기준)

독신 = (2.181 × 기준금액) ÷ 12개월

기혼 = (1.951 × 기준금액) ÷ 12개월

기준금액(price basic amount)은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에 따라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화를 기반으로 매년 산정하고, 가장 가까운 100 크로네로 반올림(2020년 기준 47,300 크로네)

국민연금의 1인당 월지급액은 2016년 16,332 크로네(2,068,460원), 2020년 17,906 크로네(2,389,681원)로 연평균 2.3% 증가

표 5 국민연금 1인당 월지급액: 2016~2020년

(단위: 크로네,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증가율
국민연금	16,332	16,479	16,623	16,877	17,906	2.3%
(소득연금+수익연금)	(2,068,460)	(2,178,875)	(2,253,475)	(2,265,443)	(2,389,681)	2.3%

주: 1. 괄호()의 숫자는 원화로 환산한 값으로 적용한 환율은 한국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환율(1 크로네는 2016년 126.65원, 2017년 132.22원, 2018년 135.56원, 2019년 134.23원, 2020년 133.46원)

자료: 스웨덴 연금청의 각 연도「Orange report」

^{2.} 세전 지급액 기준

^{2.} 세전 지급액 기준

³⁾ 스웨덴 거주기간, 연금소득 조사 결과에 따라 보증연금 월액이 결정되는데, 완전연금을 받으려면 16세가 된 해부터 64세가 되는 해까지 최소 40년 동안 스웨덴에 거주하여야 함

[참고] 소득연금 산식(2020년 기준)⁴⁾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가상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화제수(annuity divisor)로 나누어 산출

$$\begin{split} F_r &= \sum_{t=s}^{r-1} \alpha_t \; Y_t \prod_{u=t}^{r-1} \; (1+i_u) \\ P_r &= \frac{F_r}{G} \end{split}$$

 a_t 는 t 연도의 기여율

 Y_t 는 t 연도의 연금대상 소득

 j_u 는 기여액에 대해 u 연도에 부여되는 수익률

s 는 연금 가입연도

 P_r 는 r 연도의 연금급여

 F_r 는 r 연도의 적립금

G 는 연금화제수

[참고] 연금소득 상한선(2020년 기준)

1년 동안 연금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에 상한선이 있으며, 해당연도 기준소득의 7.5배를 초과하지 못함 2020년 기준 501,000 크로네(=기준소득 66,800 크로네 × 7.5)

- 기준소득은 연금급여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금액으로 매년 정부가 소득지수(income index, 소득 추이와 가격대의 변동에 따라 결정)에 따라 산정

소득지수 산식(스웨덴 연금청「Orange report」참고)

$$I_t = I_{t-1} \cdot \frac{u_{t-1}}{u_{t-2}}$$
$$u_t = \frac{Y_t}{N_t}$$

t 는 해당연도, I_t 는 t 연도의 소득지수

 u_t 는 t 연도의 연금수급자의 평균 소득

 Y_t 는 t 연도의 연금기여금 공제 후 16~64세 연금수급권자의 총 소득

 N_t 는 t 연도의 연금수급자격이 있는 $16{\sim}65$ 세 인구 수

⁴⁾ Edward Palmer, 'The Swedish Pension Reform Model: Framework and Issues'

2. 주요 연금개혁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는 1946년 기초연금, 1960년대 특별보충연금 도입 등 복지국가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1991년 경제위기 등으로 1998년 이후에는 연금지출을 축소하는 방향의 구조적 개혁 실시

가. 1946년 개혁

(1) 개혁의 배경

1913년에 도입되어 소득 및 자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한 기초연금제도는 조사 과정에서 빈곤층에 대한 낙인 문제 등이 대두되어 보편적 기초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은 광범위한 대상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당시 스웨덴이 지향하는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모습에 부합하고 계층 간 형평성 확보에 기여
 - ▶ 사무직 근로자의 퇴직연금(임의가입) 급여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근로자 간 노후소득의 보장 수준의 격차가 확대되어 공적연금제도의 역할 강화에 대한 수요 증가

(2) 주요 개혁내용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지급되었던 기초연금과 비례연금을 통합하여 '거주' 요건 충족 시 일정금액을 수급할 수 있는 보편적 기초연금제도로 전환

-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정액급여를 지급
- 보편적 기초연금의 재원은 사용자, 자영업자, 정부가 조달하였고, 기준소득에 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정액급여 방식
 - ▶ 보험료의 경우, 사용자는 월급여의 5.86%, 자영업자는 평가소득의 6.03%
 - ≥ 2000년 개혁으로 폐지되기 직전의 기초연금 급여액 수준은 독신의 경우 기준소득(월 3,050 크로네, 약 377,000원)의 96%(월 2,928 크로네, 약 362,000원), 기혼의 경우 기준소득의 157%(월 4,788 크로네, 약 592,000원)

나. 1960년대 개혁

(1) 개혁의 배경

● 1946년에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로 최소하의 노후소득을 제공하여 보편적 복지체계를 갖추었으나. 적절한 수준 의 노후소득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비례연금의 재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함

(2) 주요 개혁내용 ①: 소득비례연금 재도입

보편적 기초연금제도에 2층 제도로 소득비례연금을 재도입하고 빈곤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충연금제도 실시

- 소득비례연금제도 논의 시 공적연금 중심체제 구축, 개인연금 확대 및 금융시장 요소 반영 등에 대하여 정치적· 사회적으로 대립이 있었으나 1959년에 국민투표 등을 거쳐 재도입
- 재도입된 소득비례연금은 강제가입방식이고 재원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등으로 마련하며, 가입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추가연금액을 책정하여 지급
 - ▶ 보험료의 경우, 근로자는 평가소득의 1%, 사용자(자영업자 포함)는 13%
 - ▶ 30년 동안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재직기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15년간 평균소득의 60%를 지급

(3) 주요 개혁내용 ②: 특별보충연금

소득비례연금의 도입 이후 기초연금만 받는 수급자와의 소득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1969년에는 특별보충연금을 도입

- 기초연금만으로 적정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연금의 최대 55.5% 수준의 급여 지급
 - ▶ 기초연금과 특별보충연금을 합하면 근로자 평균 임금의 30% 수준에 도달

다. 1998년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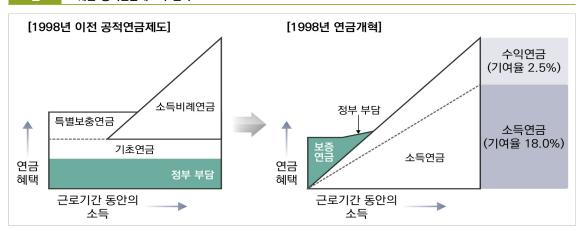
(1) 개혁의 배경

1960년 이후 지속된 저출산과 고령화문제, 1991년 금융위기 등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

- 1946년 기초연금제도, 1959년의 소득비례연금제도와 1969년의 특별보충연금의 도입은 스웨덴이 지향하는 복지국가 모델의 핵심으로 평가되었으나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금지출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개혁 논의
 - ▶스웨덴의 전체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율이 1990년 기준 27.6%였고, 2030년경 39.4%로 전망됨에 따라 공적연금기금의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 개혁 이전의 공적연금제도는 부과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률과 인구규모를 유지하지 않는 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소득비례연금의 가입자 기여에 비하여 수급 연금액이 과도하게 높아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세대내 및 세대간 형평성 문제의 야기로 연금개혁 필요성 높아짐
 - ▶ 30년 가입기간을 채운 경우, 최고 15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급여를 산정하는 규정이 생애기간 동안 소득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사무직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었음
 - ▶ 보험료와 연금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었는데, 경제위기 등으로 임금상승률 이 낮아지고 연금급여의 인상률은 높아지면서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젊은 세대의 소득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세대간 형평성 문제 발생
-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경제 불황. 평균수명 연장에도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1998년 연금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
-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특별보충연금으로 구성된 공적연금제도를 보증연금, 소득연금, 수익연금 조합으로 전환시킴

그림 2 스웨덴 공적연금제도의 변화



자료: Cabinet office(https://www5.cao.go.jp/zenbun/wp-e/wp-je03/03co-3-3-04z.html)

(2) 주요 개혁내용 ①: 보증연금

거주요건을 충족한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던 정액급여방식의 기초연금과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보충연금을 폐지하고 소득조사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확보하지 못한 노인에게 보증연금을 지급

- 보증연금의 적용대상은 스웨덴에 최소 3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인 사람이고, 거주기간이 40년 이상인 경우에 완전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40년 미만은 감액된 연금 수령
- 소득 및 자산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제도로부터 발생하는 연금소득을 조사하여 보증연금에서 설정 한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

- ▶ 보증연금은 개인의 자산이나 사적연금의 급여액을 고려하지 않고 공적연금의 급여액만을 고려하며, 재원은 중앙정부의 조세재원으로 충당함
- ➣ 급여는 소득연금과 수익연금의 급여합계액이 독신은 기준소득의 3.07배, 부부는 2.72배 이하인 경우에 지급

(3) 주요 개혁내용 ②: 소득연금

확정급여(Defined Benefit) 방식의 소득비례연금을 폐지하고 가상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방식의 소득연금제도를 도입

- 가상확정기여방식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연금급여 간의 연계가 강한 것이 특징이고, 보험료를 개인별 가상계좌에 적립하고 축적된 보험료와 수익으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 가입자의 기여, 생애기간 평균 소득, 경제적 상황, 퇴직시점,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립액을 차별화하는 소득연금으로 전환
 - ▶ 보험료 납부액이 동일하더라도 퇴직시점, 기대여명 등에 따라 연금급여에 차이 발생
- 소득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은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이고, 연금보험료는 18.5%이며 각각 절반씩 급여의 9.25%씩 부담
 - ▶ 16%는 소득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2.5%는 수익연금에 적립
 - ▶ 연금보험료는 급여가 기준소득을 넘는 경우에 부과되며, 상한선은 기준소득의 7.5배
 -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급여총액의9.25%)에 대한 조세혜택(전액 세금공제)이 적용되고, 이외에 정부의 보조금 또는 비용 지원 정책은 없음
- 소득연금은 가입자들이 61세부터 연금수급연령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금을 신청하거나 부분연금을 수급 할 수 있으며, 전체 수급자의 2/3정도가 65세에 소득연금을 수급
 - ▶소득연금 급여액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것이 개인의 퇴직연령으로 퇴직시점의 차이를 근거로 급여액에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퇴직을 조금씩 미루는 근로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주요 개혁내용 ③: 수익연금

소득연금 보험료의 2.5%를 민간부문의 보험, 은행, 투자회사 등이 운용하는 연금펀드에 적립하는 것을 의무화

- 수익연금의 급여는 개인이 선택한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정해지고, 운용주체는 민간이지만 공적연금제도의 한 부분이므로 소득연금과 동일한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음
 - ▶ 수익연금의 급여형태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모두 가능하며 연금 형태인 경우에도 종신연금 이나 잔여 기대여명기간의 연금이냐에 따라 수익률을 다르게 적용
- 재원은 본인의 연금보험료 적립원금(연금보험료 2.5%의 누적치)과 이를 금융기관에 맡겨 발생한 이자로부터 마련

- 여금가입자는 언제든지 기금유용자를 교체할 수도 있으며, 기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도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지 인출은 허용되지 않음
- ▶ 기금운용자는 대부분 민간의 펀드매니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익률 경쟁 발생
- 수익연금도 소득연금과 동일하게 61세부터 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가입자 선택에 따라 65세 이후에도 연금급여를 받지 않고 계속 운용할 수 있음

(5) 주요 개혁내용 ④: 자동조정장치 도입

소득연금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자동조정장치 도입(기대여명에 따른 자동조정장치. 연금재정 상태에 따른 자동조정장치)

- (기대여명에 따른 자동조정장치) 연금급여를 수급자의 연령별 기대여명에 따라 자동 조정
 - 연금급여는 퇴직시점의 적립금을 연금화제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기대여명이 증가하면 연금화제수가 상승하여 연도별 연금급여가 자동적으로 감액

[참고] 연금화제수 산식(스웨덴 연금청「Orange report」참고)

연금화제수는 퇴직시점에 출생코호트별 기대여명을 반영하여 산출

$$D_i = \frac{1}{12L} \sum_{k=i}^{r} \sum_{X=0}^{11} (L_k + (L_{k+1} - L_k) \frac{X}{12}) (1.016)^{-(k-i)} (1.016)^{\frac{-X}{12}}$$

 D_i : i 연령대별 연금화제수

k-i: 퇴직이후의 기간(단위: 년, k=i, i+1, i+2, etc)

X: 개월 수 (0, 1,...,11)

 L_i : 스웨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출생 10만명당 연령대별 생존자 수.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연금을 철회하는 경우 60세에 도달하기 직전 5년 동안, 이후 철회 시에는 64세에 도달한 시점의 통계를 적용

- (연금재정 상태에 따른 자동조정장치) 소득연금의 총 자산과 총 연금부채의 비율인 균형비율(balance ratio)을 활용하며, 연금부채가 자산보다 커져 1 이하로 낮아지면 소득연금제도의 안정적 재정관리를 위하여 장치가 작동하여 연금액이 조정됨
 - ➤ 자동적으로 1 이상으로 회복할 때까지 기수급 중인 연금은 소득지수(income indexation) 대신 소득지수 보다 낮은 균형지수(balance indexation)에 연동되어 금액이 조정됨
 - ▶ 자동조정장치가 작동되면 소득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감소하지만, 그 결과로 소득연금제도의 재정이 회복되어 비율이 1 이상으로 높아지면 소득대체율도 다시 높아지게 됨

▶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균형비율이 연금개혁 이후 최초로 1미만을 기록하였는데, 2008년의 균형비율은 2009년에 정부가 승인한 후 2010년 1월부터 적용되었고 이와 같은 자동조정장치의 작동으로 2018년 이후에는 1을 회복

표6 균형비 추이: 2009~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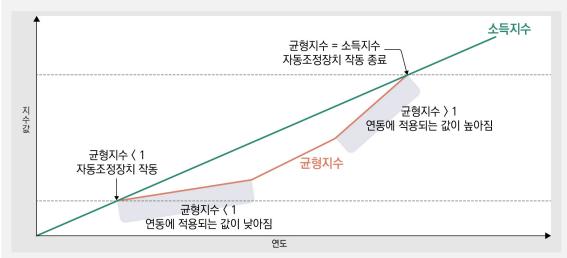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균형비	1.0000	0.9826	0.9383	0.9406	0.9592	0.9436	0.9474	0.9829	0.9894	1.0000	1.0000	1.0000

[참고] 균형지수 작동원리 및 산식

연금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균형비가 1보다 작아지면 장기적인 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동조정장치가 작동하게 됨 예를 들면, 소득지수가 100에서 104로 상승하고, 균형비가 0.99를 기록한 경우, 변환균형비(damped balance ratio)는 산식에 따라 0.9967(=(0.99-1)÷3 +1)이 됨. 그 결과 균형지수는 103.66(=104×0.9967)이 되고, 다음 연도의 연금수지계정은 소득지수 상승률 4%가 아닌 균형지수 3.66%에 따라 연동됨

$$\begin{split} B_t &= I_t \bullet BT_t^* \\ B_{t+1} &= B_t \bullet (\frac{I_{t+1}}{I_t}) \bullet BT_t^* \bullet BT_{t+1}^* \end{split}$$

 B_t 는 t 연도의 균형지수 I_t 는 t 연도의 소득지수 BT_t^* 는 t 연도의 변환균형비



자료: Maria del Carment Boado-Penas, et al.(2020). Last Lessons Learned from the Swedis Public Pension System

3. 연금개혁 성과와 한계

스웨덴의 연금개혁은 보험료 인상 없이 가상확정기여방식의 소득연금제도와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으로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성과

- 연금개혁의 효과로 보험료율을 18.5%로 유지하면서도 공적연금급여 지출 규모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최대가 되는 2020~2030년대 그리고 2060년대까지도 일정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스웨덴의 GDP대비 공적연금급여 지출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9.5%, 2010년 9.6%, 2013~2015년 평균 8.9%로 지속적으로 감소
- 한편, 장기전망에서도 스웨덴은 2030년 이후 7%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 2060년 기준 7.5%는 EU, OECD 국가 평균(각각 11.2%, 10.9%)보다 상당히 낮아 스웨덴 공적연금제도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

스웨덴의 GDP대비 공적연금급여 지출 비율 현황 및 전망

(단위: %)

	2007	2010	2013-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60
스웨덴	9.5	9.6	8.9	8.3	8.1	7.9	7.8	7.5	7.3	7.2	7.5
EU	-	_	11.3	11.2	11.4	11.6	11.7	11.7	11.6	11.4	11.2
OECD	-	-	8.9	-	-	-	-	-	-	9.5	10.9

주: 스웨덴의 2007년, 2010년 값은 주은선(2012) 「해외공사연금-스웨덴」을 인용

자료: OECD (2017), "Long-term projections of public pension expenditure", in Pensions at a Glance 2017: OECD and G20 Indicators.

기존 소득비례연금의 30년 가입 시 최고 15년 평균 소득을 적용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공적연금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조기퇴직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함

- 조기퇴직 문제는 연금재정 측면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수급문제를 야기시켰으며, 가상확정기여방식의 소득 연금 도입과 생애 평균소득 적용으로 퇴직연령에 따라 연금급여액의 차이가 뚜렷해짐
- 그 결과, 법적으로도 65세라는 기본적인 연금수급연령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고, 65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규정도 67세까지 적용가능한 것으로 개정됨
 - 스웨덴의 연령별 인구 고용률을 살펴보면. 55~64세의 경우 2000년 64.8%에서 2020년 96.4%로 크게 증가함

다만, 1998년 연금개혁 이후 모든 계층의 소득대체율이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연금급여액이 낮아지면서 노인빈곤 위험이 높아지는 한계가 있음

- 40년 근로 및 65세 퇴직을 가정하여 소득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전망한 결과, 2005년 53%에서 2050년 40.4%로 13%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소득대체율의 전망값이 40년 근로를 가정하여 추정한 점을 고려할 때, 가입기간이 40년 미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소득대체율은 50% 이하로 낮아지고 노후빈곤 위험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
- 유럽연합 국가의 빈곤위험률 14.3%(2017년)이고, 스웨덴의 노인빈곤 위험은 2005년 9.5%에서 2016년 17.9%까지 증가하였는데 연금급여액의 하락으로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 노인빈곤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됨

표 7 스웨덴 연금수급자의 빈곤 위험률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스웨덴	9.5	11.3	9.5	15.3	16.2	14.3	16.7	16.7	15.9	14.4	17.2	17.9	16.2
EU	_	_	-	_	_	13.9	14.0	13.2	12.6	12.7	13.2	13.8	14.3

주: EU의 연금수급자 빈곤위험률 평균은 2010년부터 산출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9), "1 in 7 pensioners at risk of poverty in the EU", EUROSTAT 검색 결과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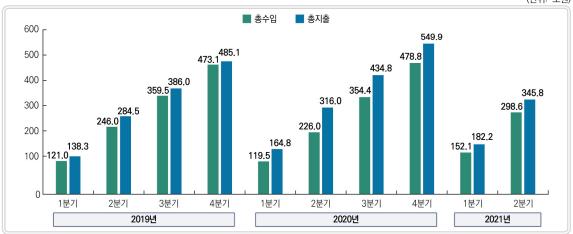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총수입·총지출(분기별 누계)

(단위: 조원)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재정통계 - 재정총량 - 총수입·총지출 (www.nabostats.go.kr)

재정수지 추이(월별 누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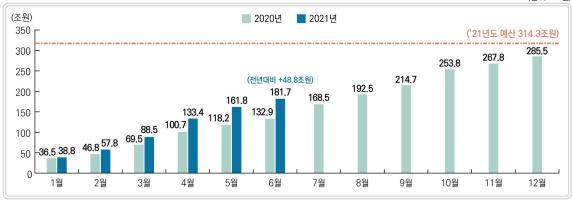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재정통계 - 재정총량 - 재정수지 (www.nabosta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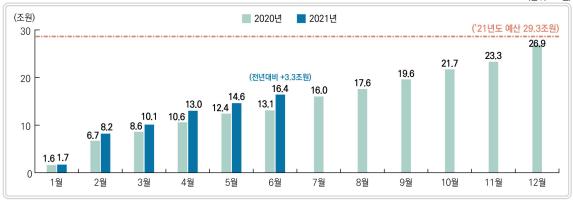
국세수입 실적(월별 누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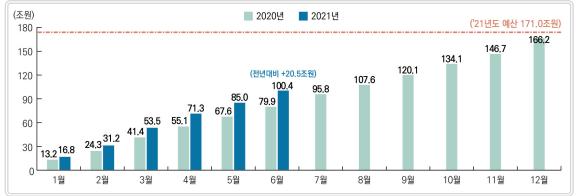
세외수입 실적(월별 누계)

(단위: 조원)



기금수입 실적(월별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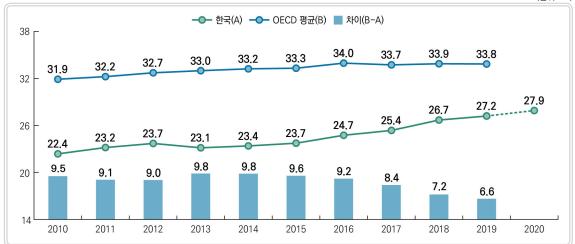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조세통계 - 기초통계 - 진도율(월별 누계/전년동기대비) (www.nabostats.go.kr)

국민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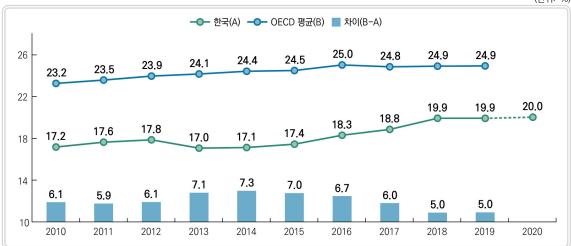


- 주: 1)국민부담률은 명목GDP대비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합의 비율(2020년은 잠정치)
 - 2) OECD 평균은 '21년 5월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37개국 기준
 - 3) 2019년 자료 미제공 국가(일본, 호주)는 전년 수치를 인용하여 OECD 평균 계산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조세통계 - 국제비교 - OECD국가들의 국민부담률(www.nabostats.go.kr)

조세부담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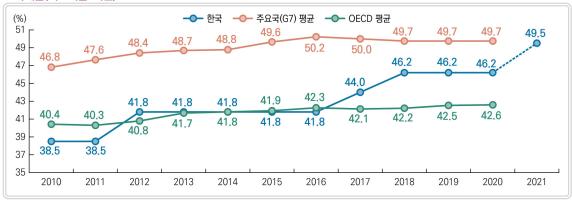


- 주: 1) 조세부담률은 명목GDP대비 조세수입 비율(2020년은 잠정치)
 - 2) OECD 평균은 '21년 5월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37개국 기준
 - 3) 2019년 자료 미제공 국가(일본, 호주)는 전년 수치를 인용하여 OECD 평균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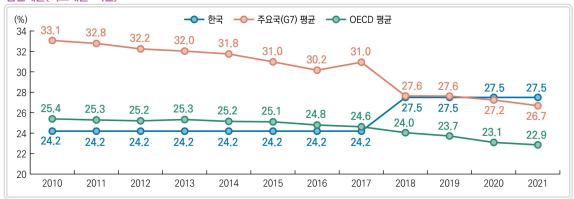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조세통계 - 국제비교 - OECD국가들의 조세부담률(www.nabostats.go.kr)



소득세율(최고세율 기준)



법인세율(최고세율 기준)



부가가치세율(표준세율 기준)



주: 1) OECD 평균은 '21년 5월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37개국 기준

2) 소득세와 법인세는 최고세율 기준이며, 지방세(지방소득세) 포함

3)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 기준(미국의 판매세는 제외)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조세통계 - 국제비교 - OECD국가들의 소득세 명목최고세율/법인세 명목최고세율/부가가치세율(www.nabostats.go.kr)



발행일 2021년 8월 31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경성문화사(02-786-2999)

ISSN 2733-8304

발간등록번호 31-9700489-001575-08

© 국회예산정책처, 2021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논문 공모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재정전문기관입니다.

예산정책연구는 재정·경제, 조세 및 공공정책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게재하며,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정책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모를 기대합니다.

논문 공모 및 학술지 발간일

논문 공모 상시모집

투고 자격 석사과정 이상

발 간 일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

※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논문 제출 및 문의처

제출방법 nabo.jams.or.kr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

문 의 처 예산정책연구 편집위원회

전 화 02-6788-4619

홈페이지 www.nabo.go.kr/journal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89-001575-08

ISSN 2733-8304

